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-1915호

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·공고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문화유산법」) 제13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자연유산법」) 제10조 및 「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4조, 「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[붙임 1]과 같이 허용기준을 작성 및 조정하고자,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은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또는 관할 구·군 문화유산 관련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8. 18.

인천광역시장

1. **대상유산** : 인천광역시 소재 시지정유산 34개소(허용기준 29건)

연번	고시	종목	유산명	구·군	상세주소
1	1	기념물	삼목도 선사 유적	중구	중구 운서동 1830-1번지 등 / 40필지
2	2	문화유산자료	남북동 조병수 가옥		중구 용유로380번길 21
3	3	유형문화유산	인천도호부 관아	미추홀구	미추홀구 문학동 343-2
4		유형문화유산	인천향교		미추홀구 문학동 349-2 외
5	4	기념물	문학산성		미추홀구 문학동 산27-1
6	5	기념물	이윤생·부인 강씨 정려		미추홀구 용현동 442
7	6	유형문화유산	논현포대	남동구	남동구 논현동 415-56 외
8	7	기념물	김재로 묘		남동구 운연동 산64-13
9	8	기념물	월성박씨 종중 묘역		남동구 서창동 산29-17
10	9	문화유산자료	장도포대 터		남동구 논현동 111-13 외
11	10	기념물	이찰·이율 형제 정려	계양구	계양구 갈현동 산73-6
12	11	기념물	이선봉 묘역		계양구 동양동 152-5
13	12	유형문화유산	심즙 신도비	서구	서구 공촌동 산8
14	13	기념물	류사눌 묘		서구 경서동 산200-1
15	14	기념물	대곡동 고인돌군		서구 대곡동 산123-1
16		기념물	평산신씨 종중 묘역		서구 대곡동 산120-1
17	15	기념물	반남박씨 대종중 묘역		서구 대곡동 산151-1
18	16	기념물	김안정 묘 및 묘비		서구 원당동 810-15

19	17	유형문화유산	강화 보문사 석실	강화군	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 136 외
20		자연유산	강화 보문사 향나무		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
21		민속문화유산	강화 보문사 맷돌		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/ 1필지
22	18	유형문화유산	강화 삼암돈대		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-4 외
23	19	유형문화유산	강화 적석사 사적비		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74
24		기념물	강화 고천리 고인돌군		강화군 하점면 고천리 산95 외
25	20	기념물	이규보 묘		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산115
26	21	기념물	강화 봉천대		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63
27	22	기념물	강화 계룡돈대		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
28	23	기념물	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		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4-1 외
29	24	기념물	허유전 묘		강화군 불은면 두문리 산297
30	25	기념물	강화 인산리 석실분		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71 외
31	26	기념물	강화 건평돈대		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
32	27	문화유산자료	강화 원층사 터		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
33	28	문화유산자료	강화 망월돈대		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 외
34	29	문화유산자료	강화 무태돈대		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1-4 외

2. 조정사유

ㅇ 「문화유산법」 제13조, 「자연유산법」 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화함에 따라, 시지정 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수립하여 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

※ 본 공고 내용은 조정(안)이며,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고시할 예정임

3. 조정내용 : [붙임 1]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(안) 참고

4. 공고기간 : 2025. 8. 18. ~ 2025. 9. 7.(21일간)

5.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

ㅇ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(건축 및 개발행위) :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약식 영향진단을 생략하고 각 군·구 국가유산 관련부서(국가유산과, 문화관광과 등) 협의를 거쳐 처리

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(건축 및 개발행위) : 약식영향진단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

6. 의견제출

ㅇ **제출기간** : 공고기간 만료일(2025년 9월 7일) 18:00까지

ㅇ **제출방법** : 서면제출([붙임 2] 의견서 이용)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(bjs5467@korea.kr) 제출

※ 공고기간 만료일 도착분에 한함(2025년 9월 7일 18:00까지)

- 성명(법인 또는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

ㅇ **제출장소**

- 방문 : 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군·구 문화유산 관련부서

연번	시·구·군	부서명	주 소	연락처
1	인천시	문화유산과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(구월동), 신관 9층	032-440-4032
2	중구	문화관광과	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, 제1청사 동별관 1층	032-760-6474
3	미추홀구	문화예술과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(숭의동), 본관1청사 3층	032-880-7973
4	남동구	문화관광과	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(만수동), 본관 6층	032-453-2133
5	계양구	문화체육관광과	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, 4층	032-450-5824
6	서구	문화관광체육과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, 서구청 제2청사), 13층	032-560-5932
7	강화군	국가유산과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 지킴이센터 3층	032-930-3907

- 우편 : (21555)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(구월동) 인천시청 신관 9층,
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

※ 문의처 :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(☎032-440-4032)

7. 기타사항

ㅇ 본 허용기준 조정(안)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(수렴)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붙임 1.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(안) 1부.
2.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(안) 의견서 1부.

끝.

[붙임 1]

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

1. 중구

■ 남북동 조병수 가옥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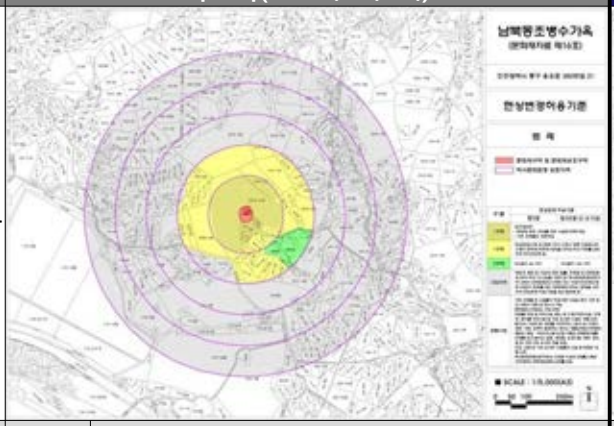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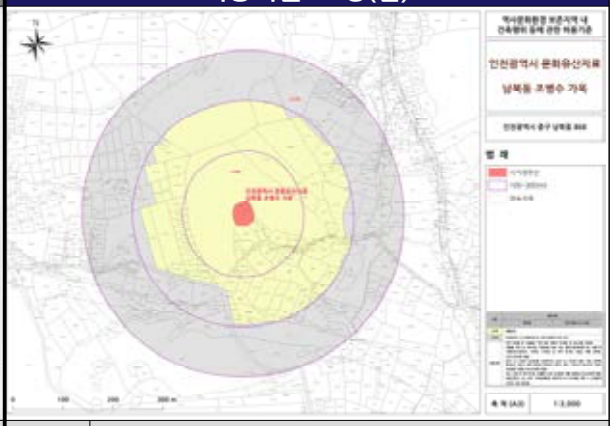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</td><td rowspan="3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10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3m이상의 절·성토를·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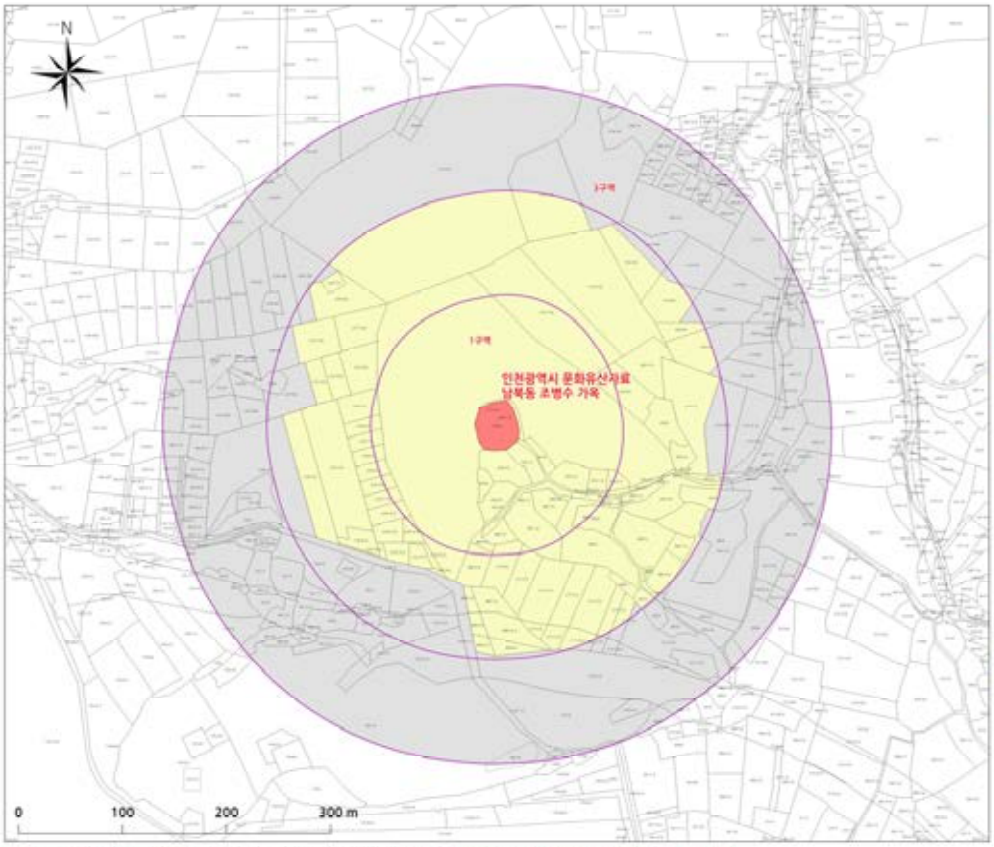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

남북동 조병수 가옥

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868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복제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

남북동 조병수 가옥

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868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복제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삼목도 선사 유적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4.01.2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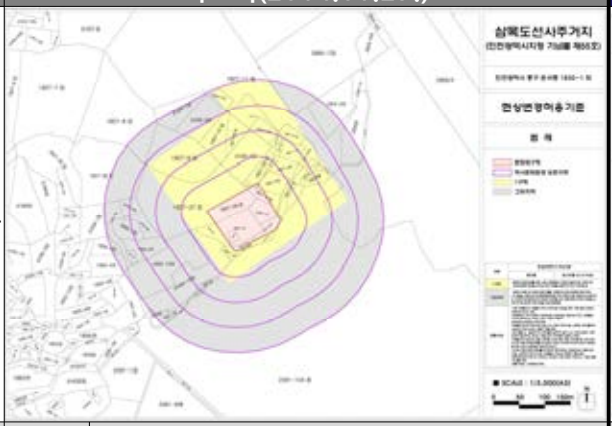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신축·증축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가능
◦ 건축행위시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
◦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
◦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(건축물 최고높이 산정시 대지에 두 개의 도로가 접해있을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)
◦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
◦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지표조사 대상은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, 시굴, 발굴조사를 선행
◦ 공통사항은 1구역에만 해당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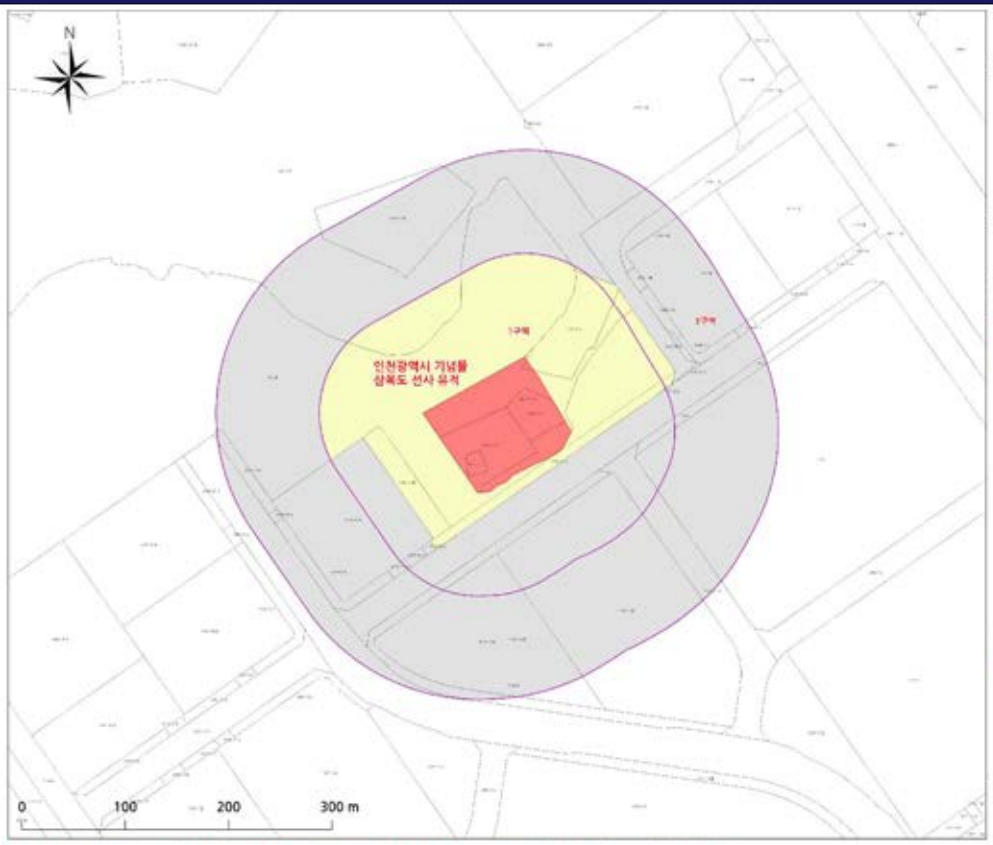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
삼목도 선사 유적

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331-1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100~2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
삼목도 선사 유적

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331-1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100~2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2. 미추홀구

■ 인천도호부 관아 외 1개소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0.04.14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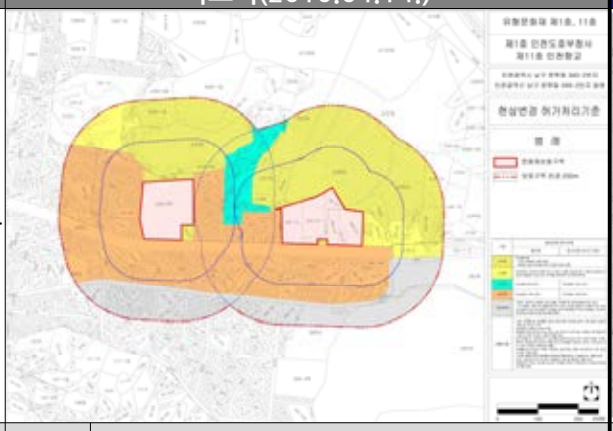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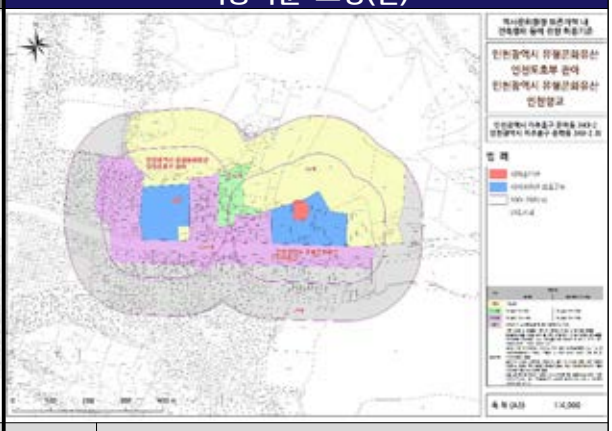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td>2-1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/tr>
<tr><td>3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4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6m 이하</td><td>2-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4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8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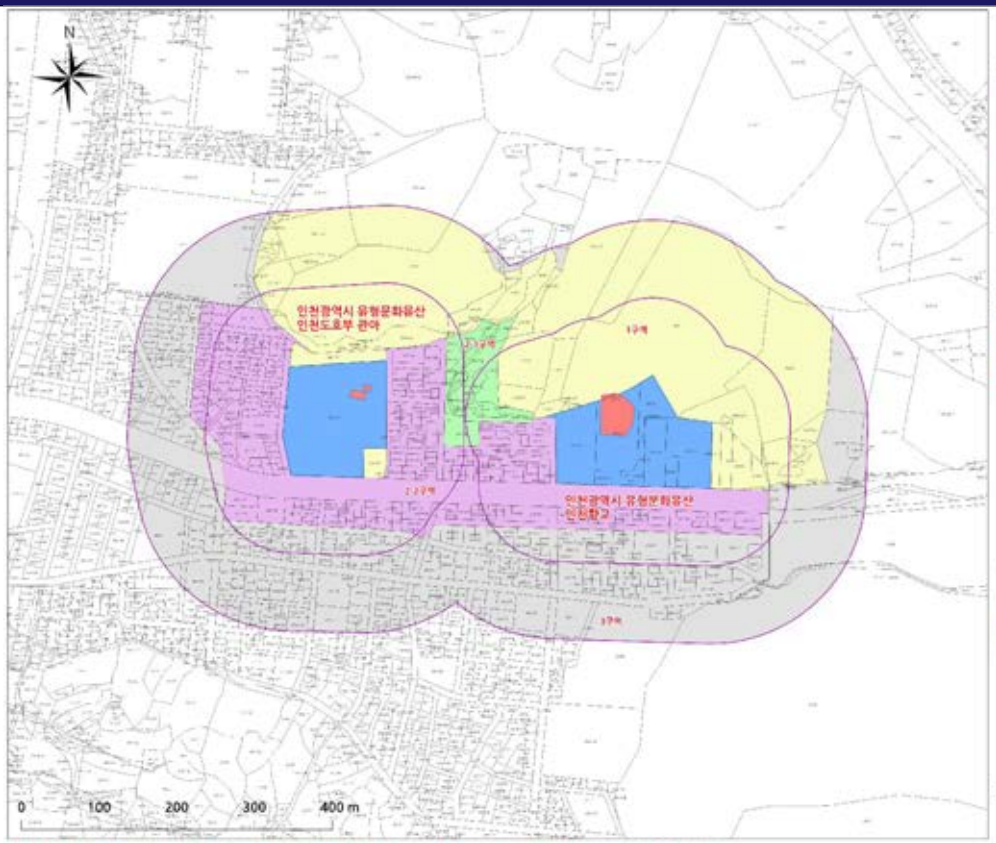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
인천도호부 관아
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
인천향교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3-2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9-2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2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4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
인천도호부 관아
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
인천향교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3-2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9-2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2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4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문학산성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신규고시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신규 작성 대상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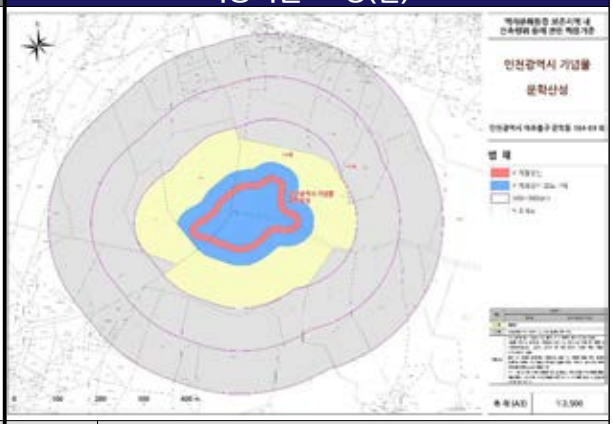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공통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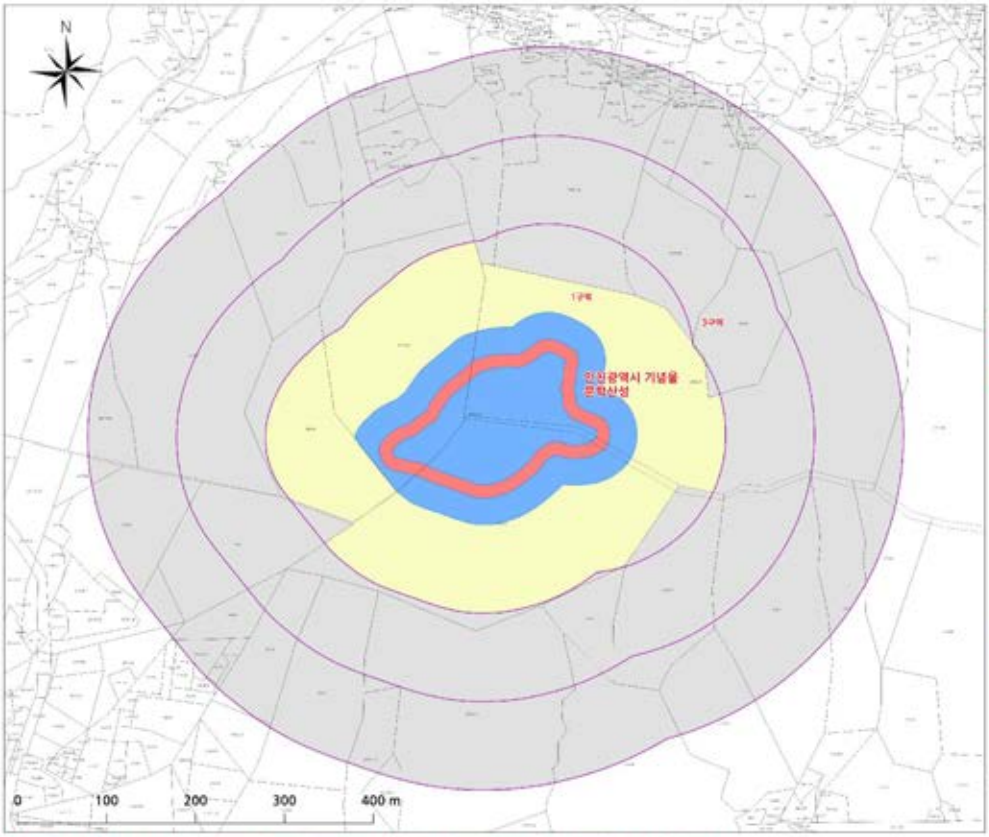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문학산성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64-69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5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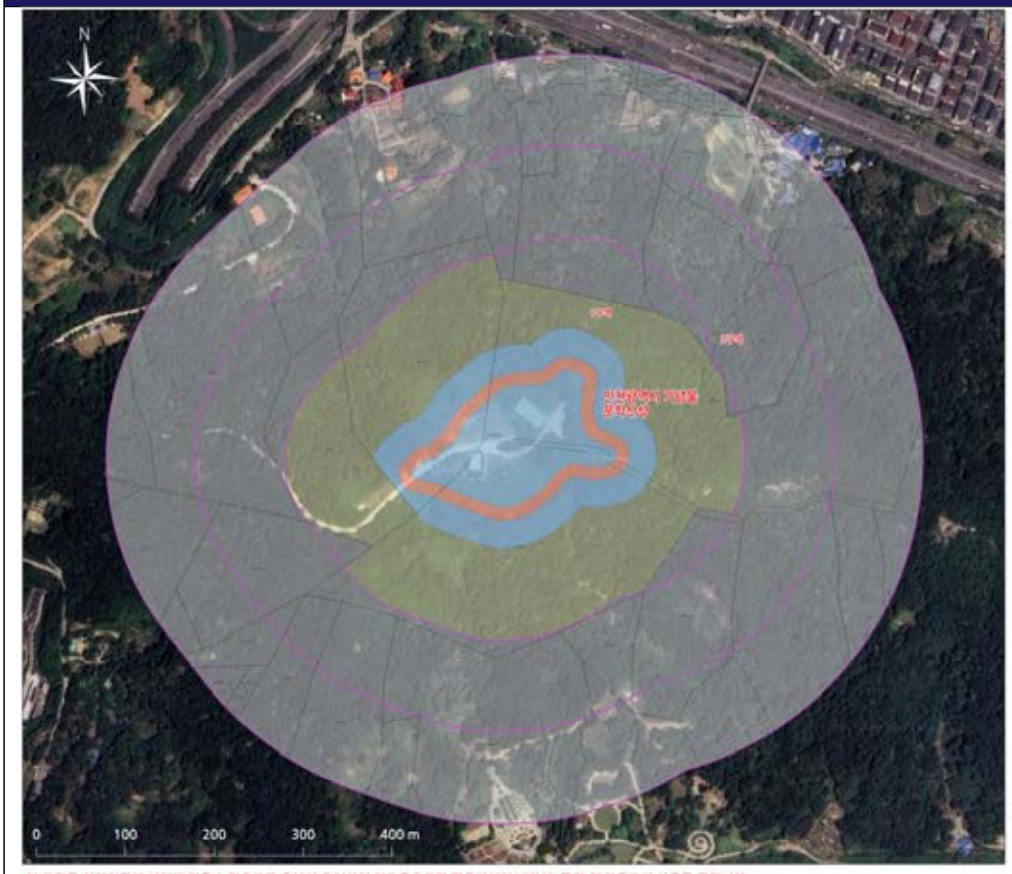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문학산성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64-69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5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이윤생·부인 강씨 정려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0.04.14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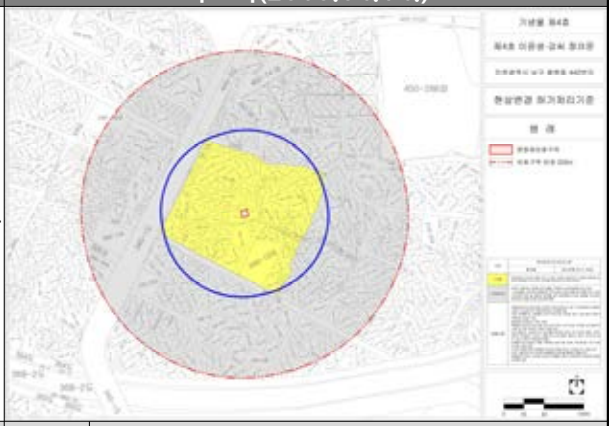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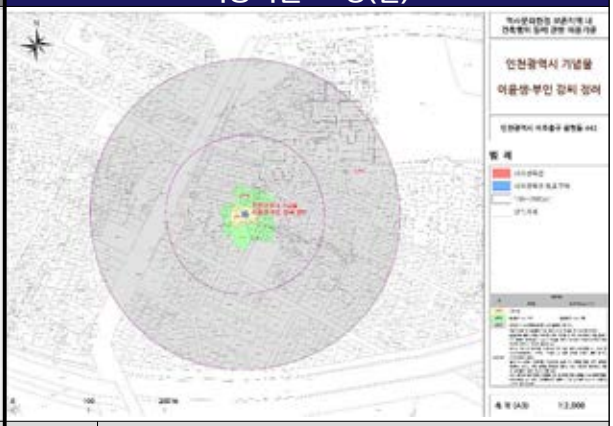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td>1구역
2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
◦ 최고높이 5m 이하 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영향검토구역 반경내에 대규모 개발사업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)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
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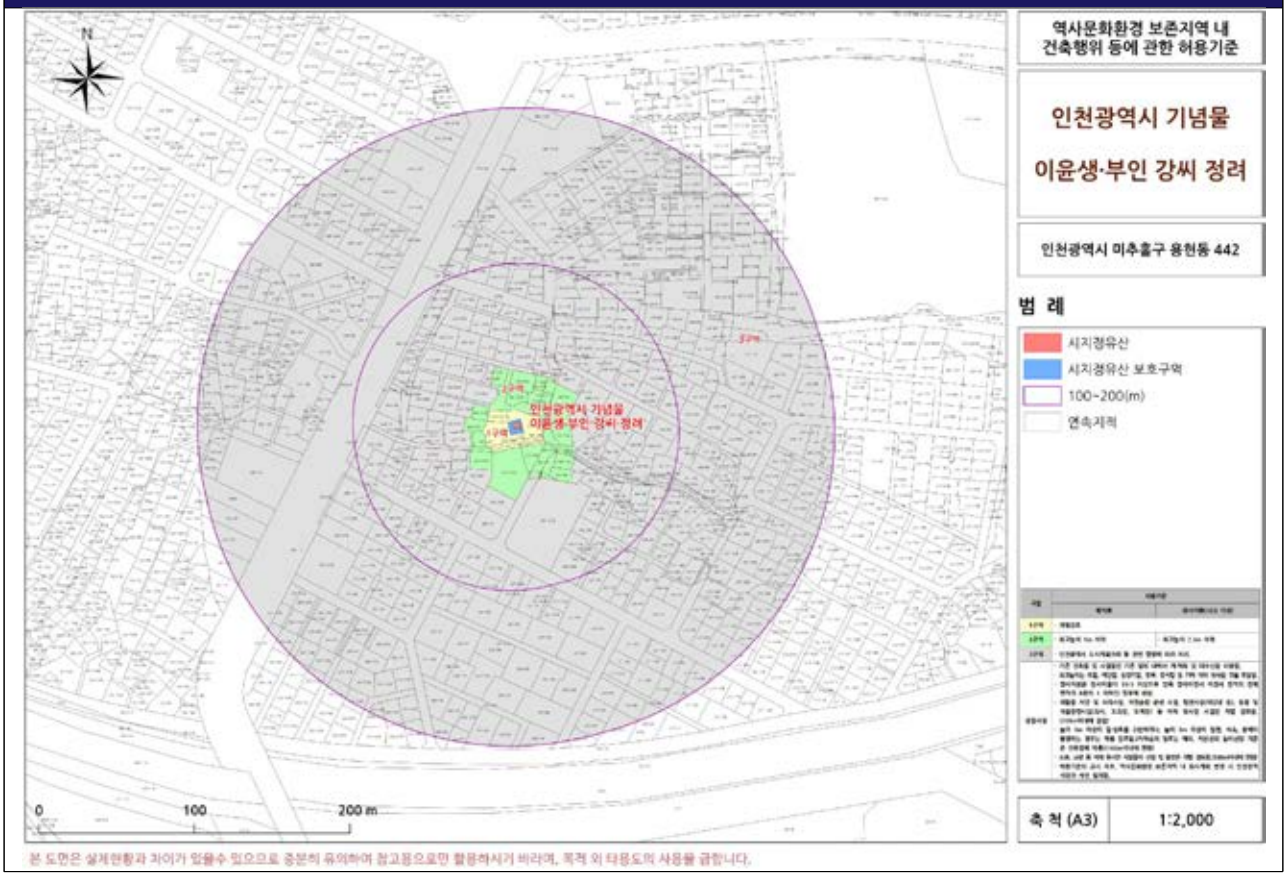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3. 남동구

■논현포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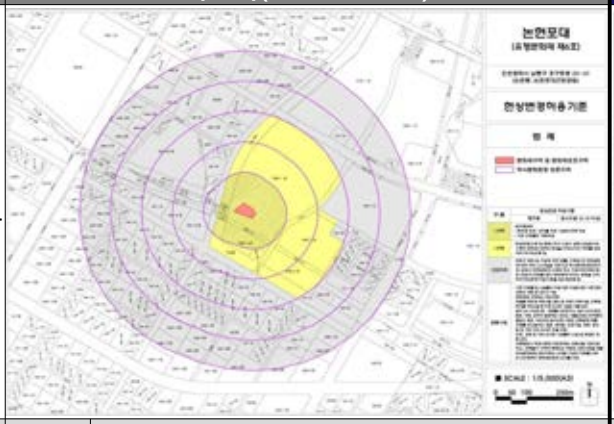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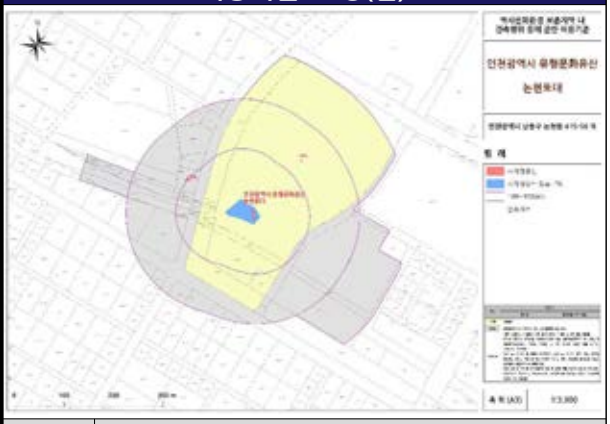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.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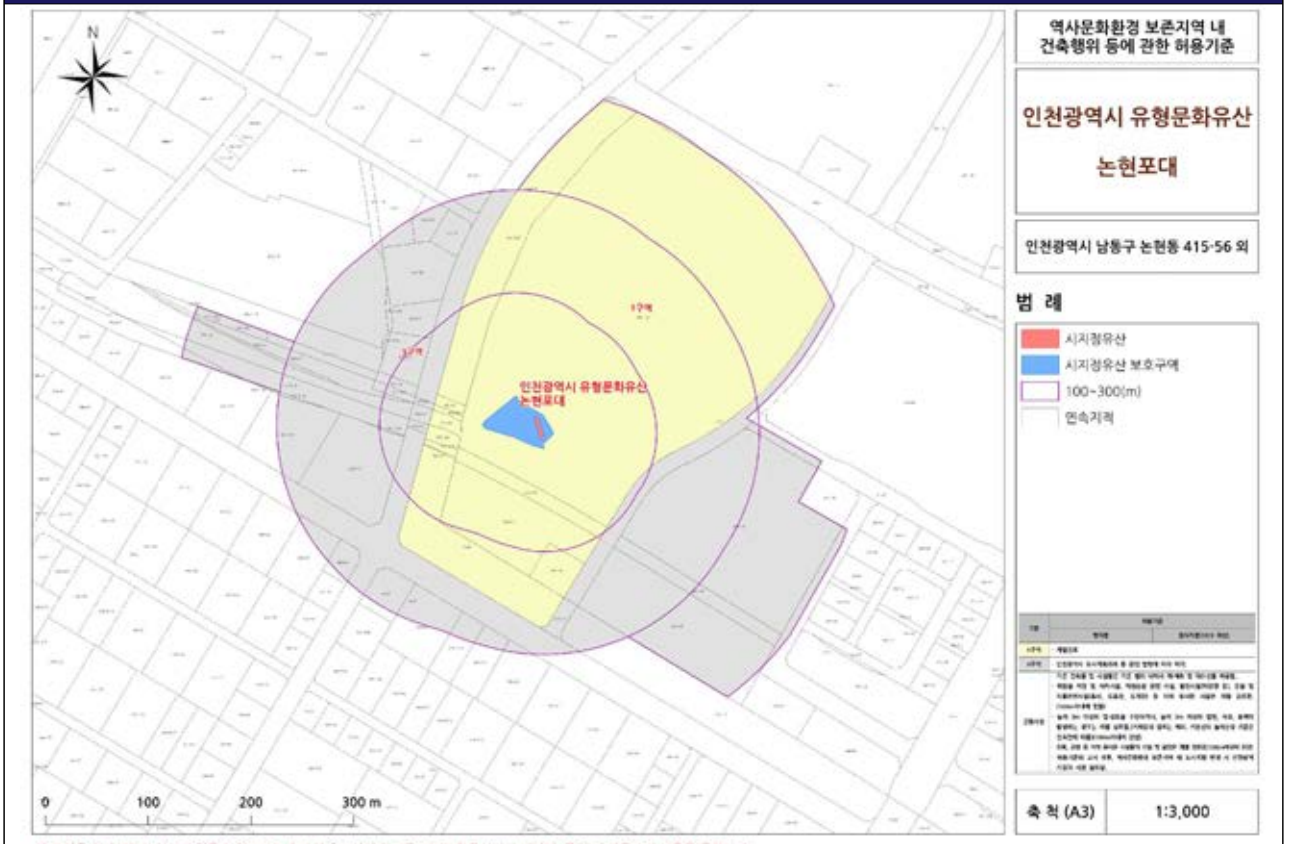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복제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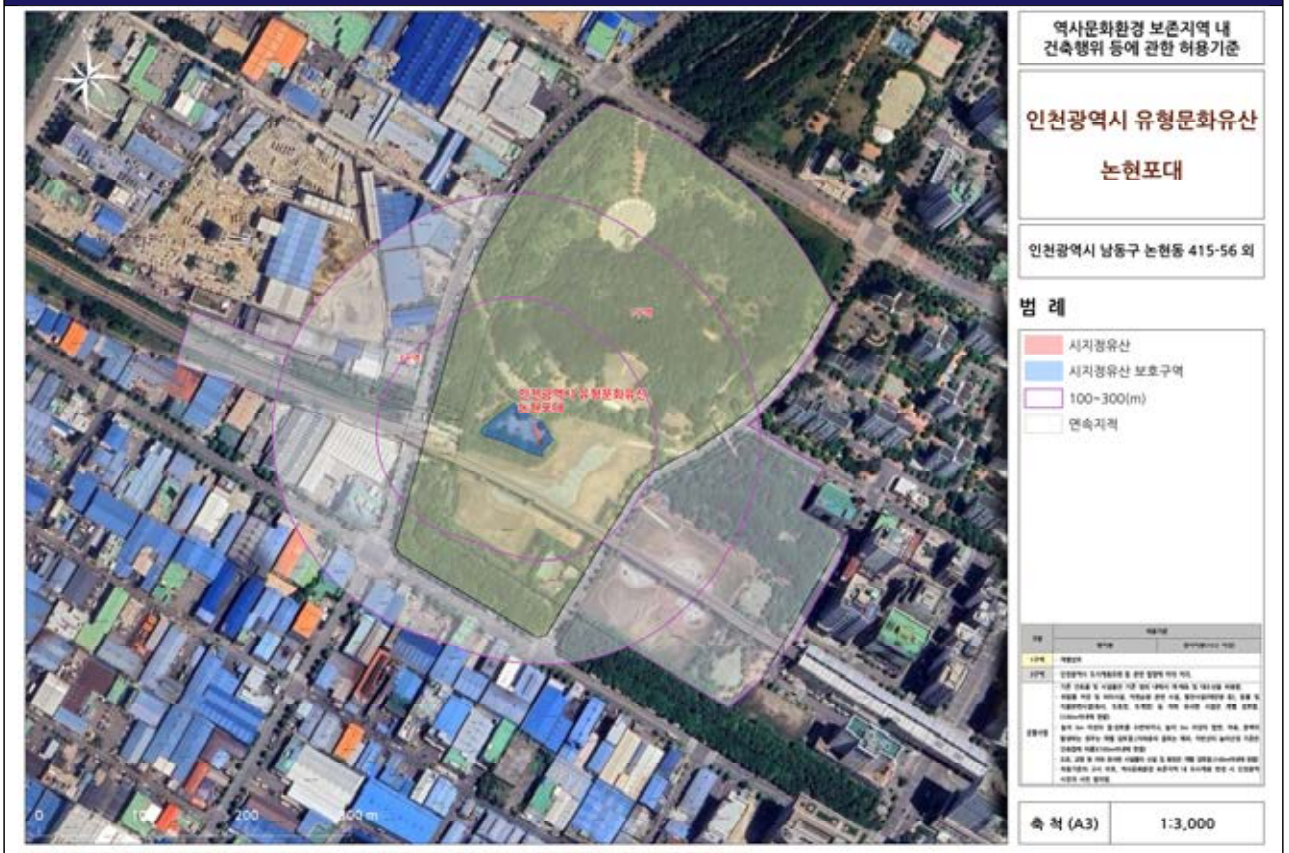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복제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김재로 묘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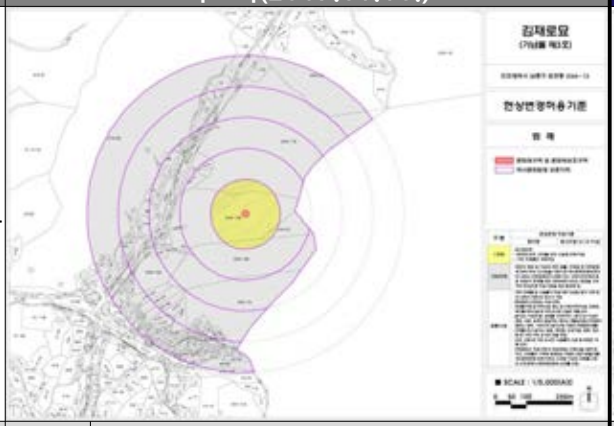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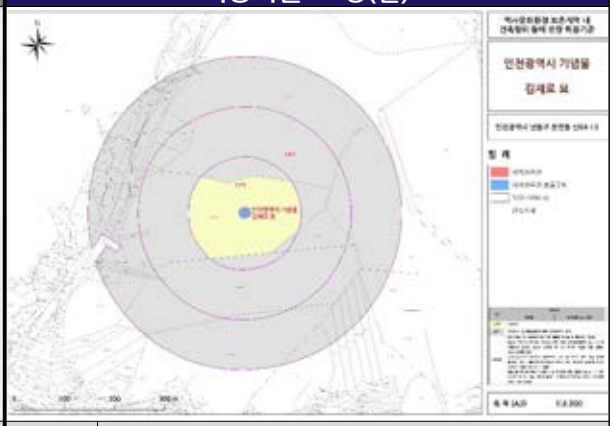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,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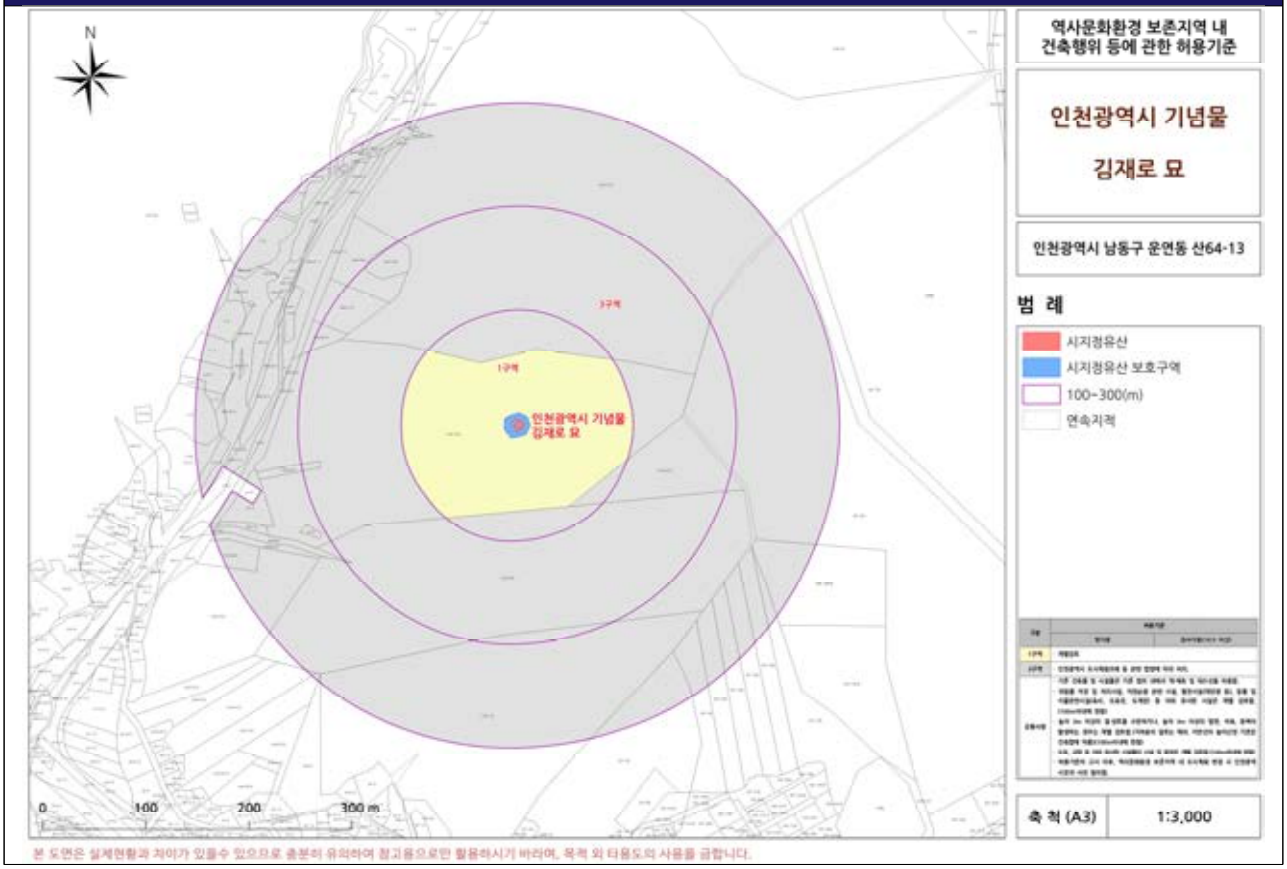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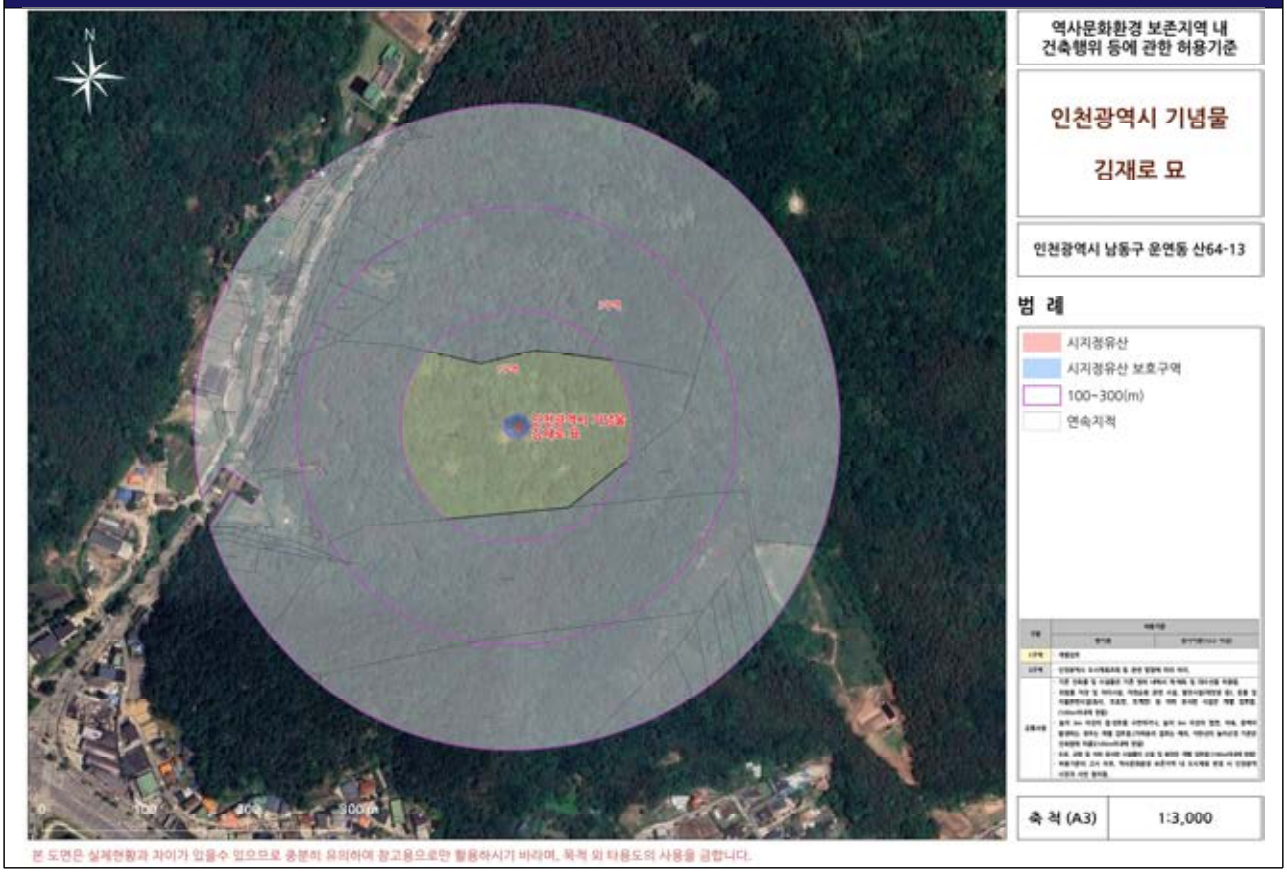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월성박씨 종중 묘역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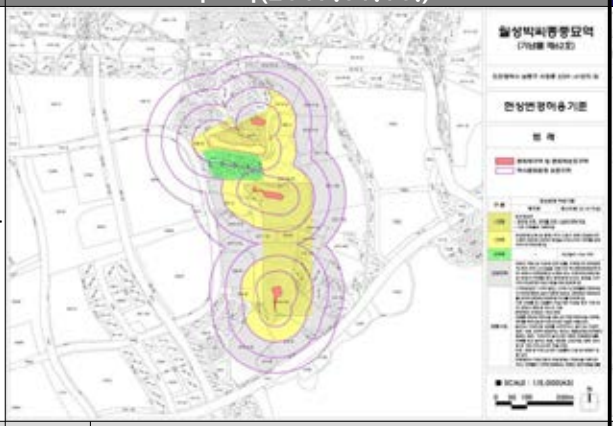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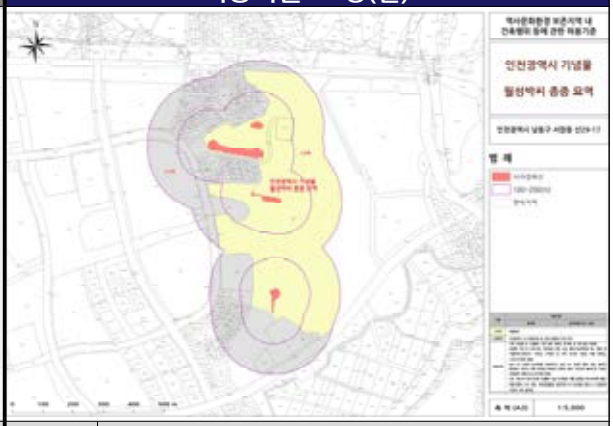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 rowspan="3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1구역(빗금친 1구역 제외), 2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기준을 따르되, 문화재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
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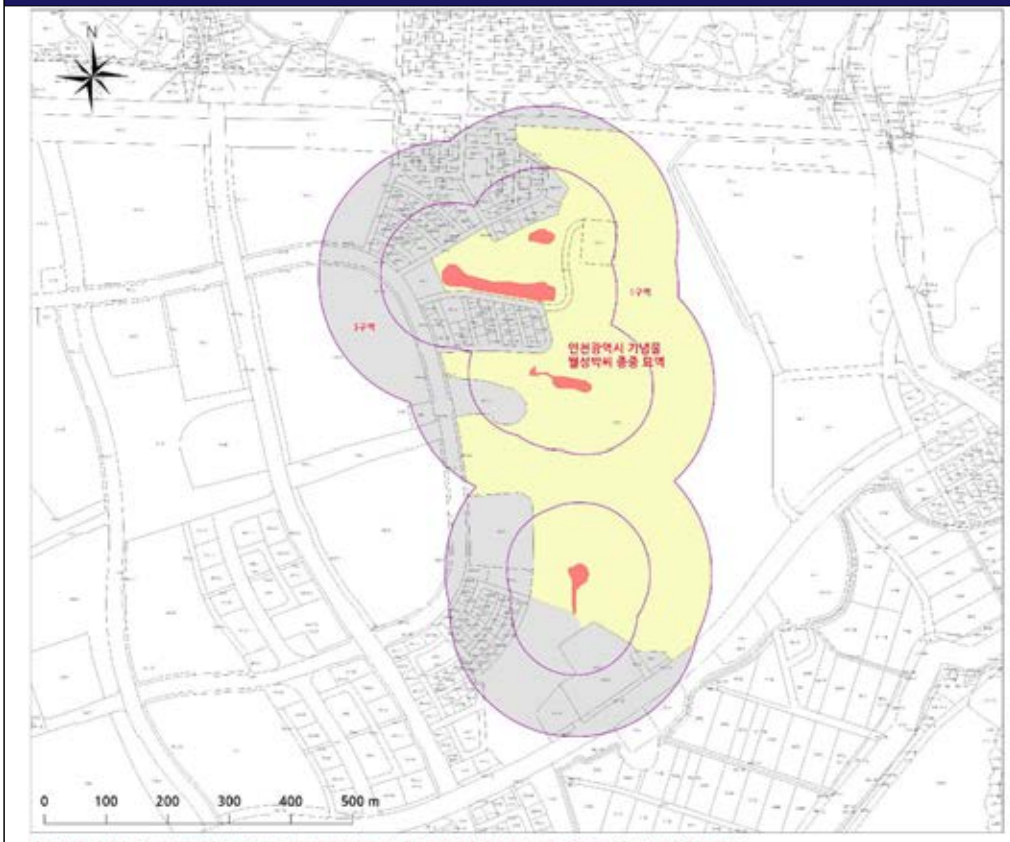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
월성박씨 종중 묘역

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9-17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100~2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5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
월성박씨 종중 묘역

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9-17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100~2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5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장도포대 터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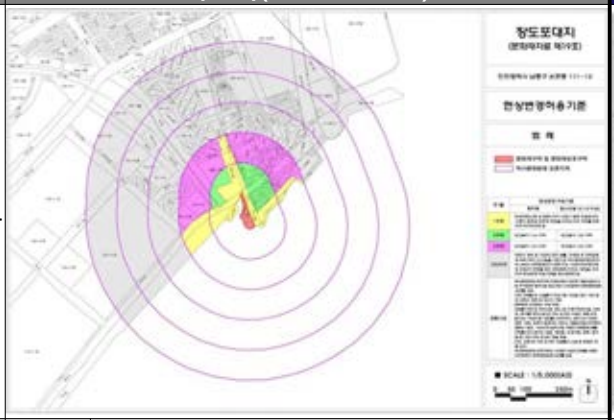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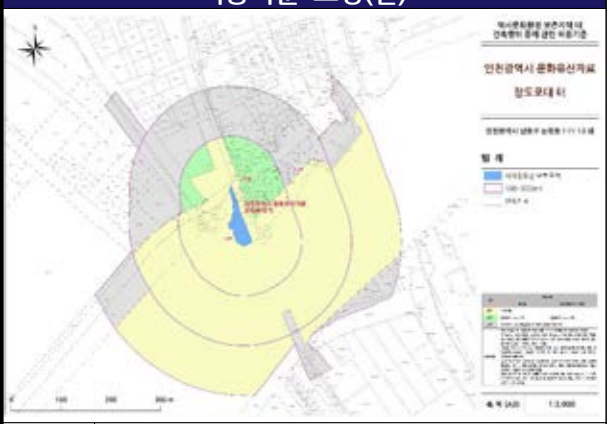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.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1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3m 이하</td><td rowspan="2"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1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5m 이하</td></tr>
<tr><td>3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7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9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(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)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
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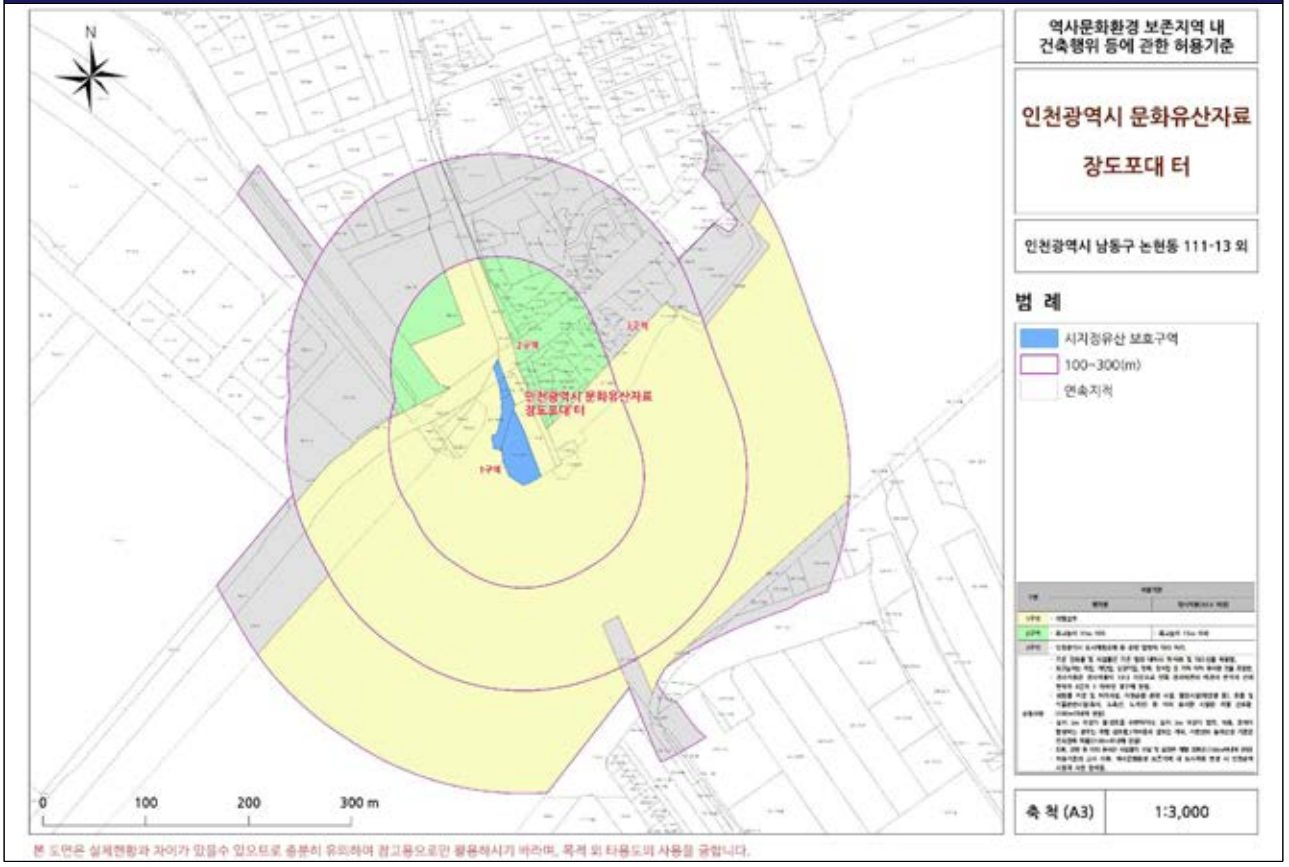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4. 계양구

■ 이찰·이율 형제 정려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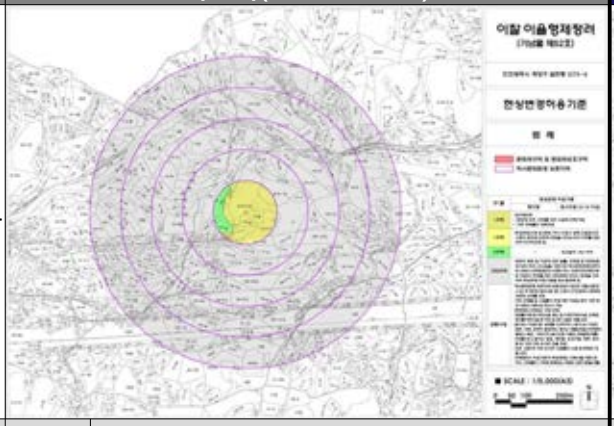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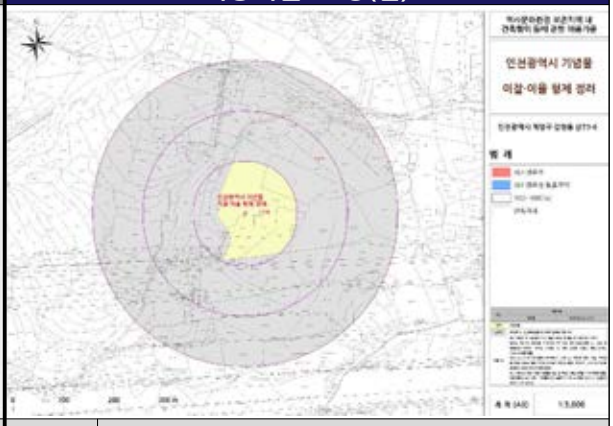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 rowspan="3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(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)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
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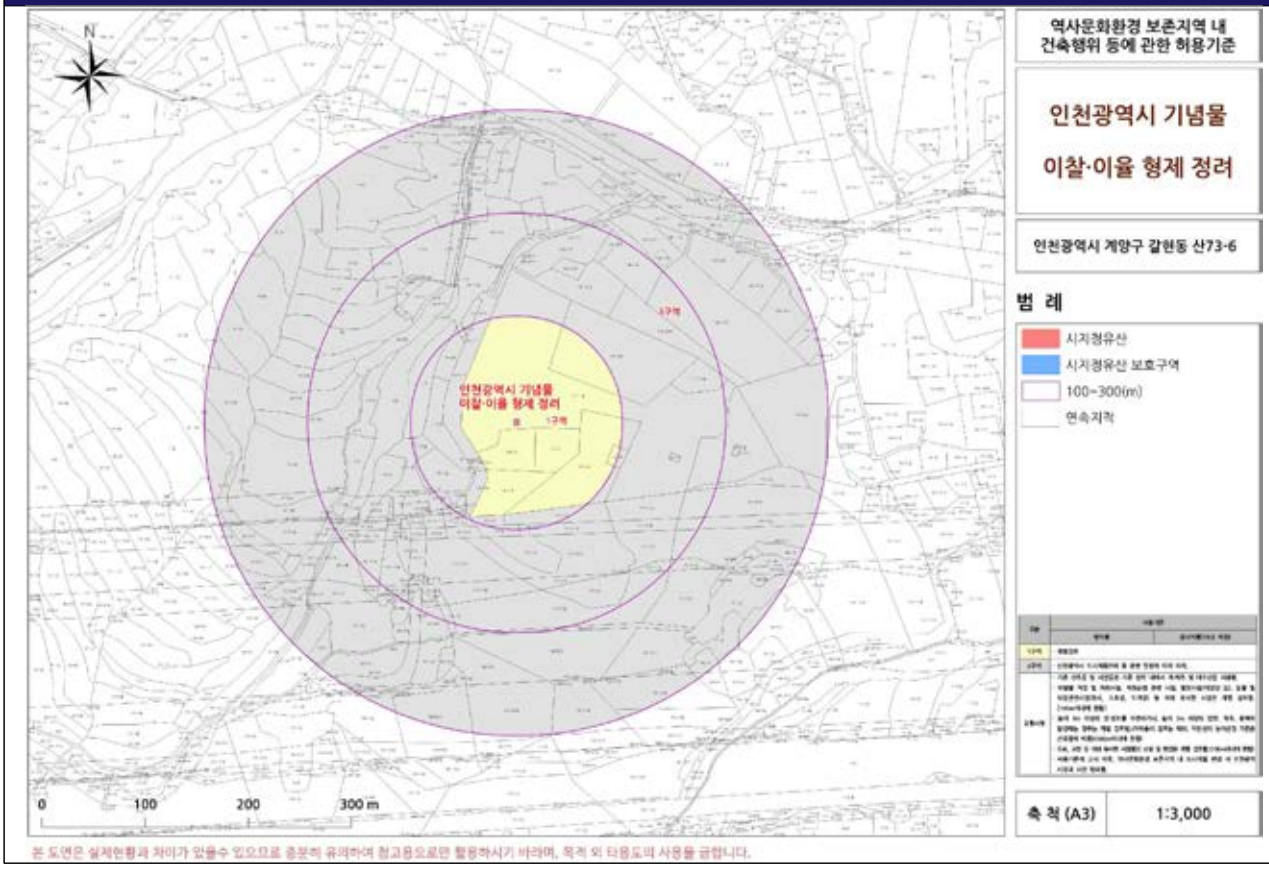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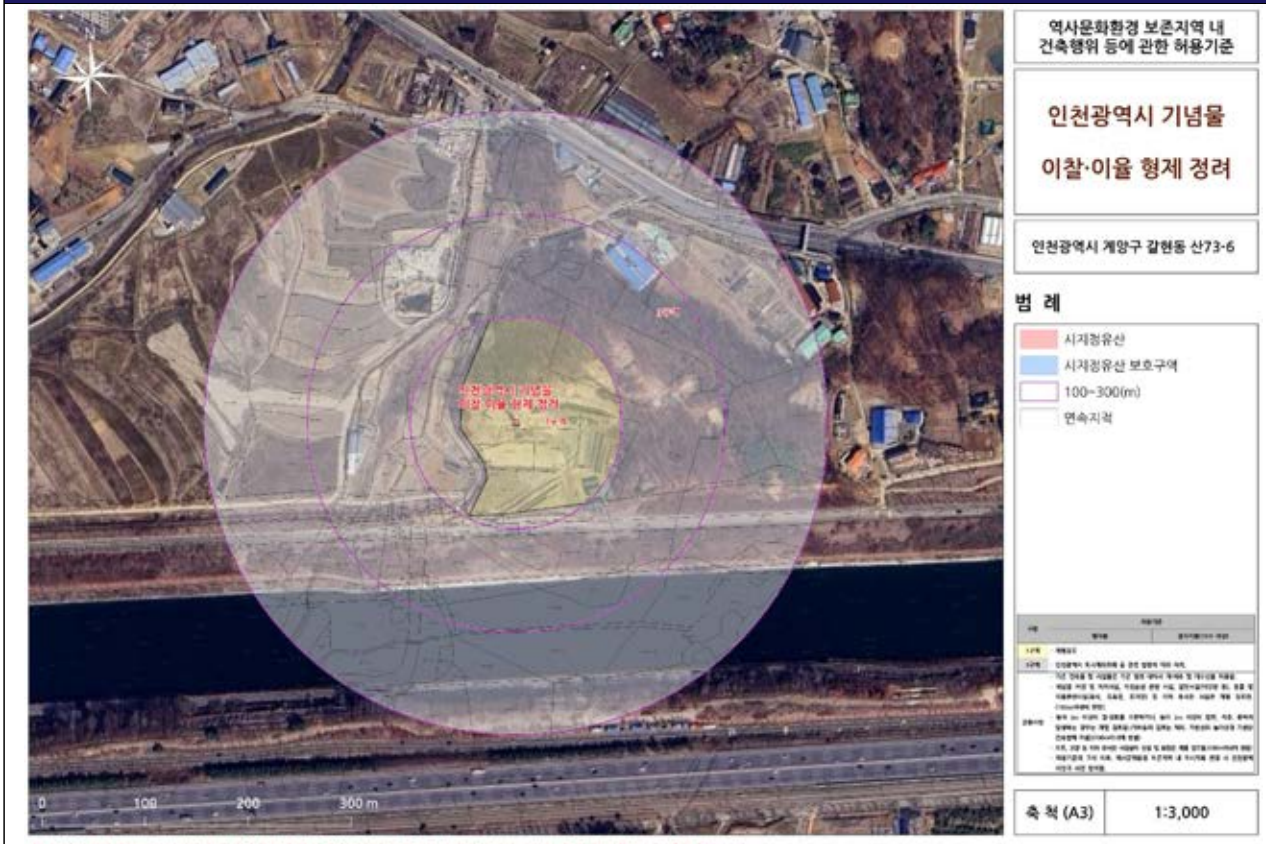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이선봉 묘역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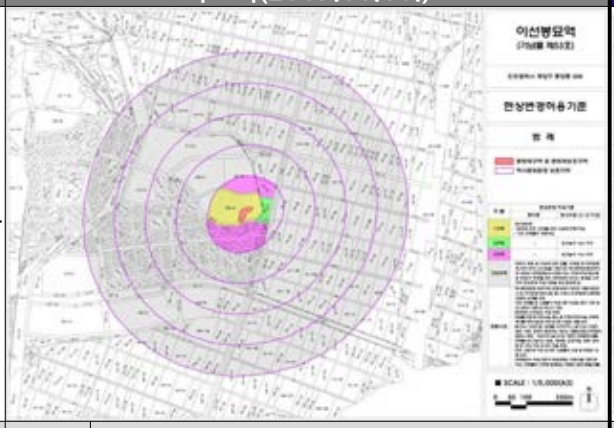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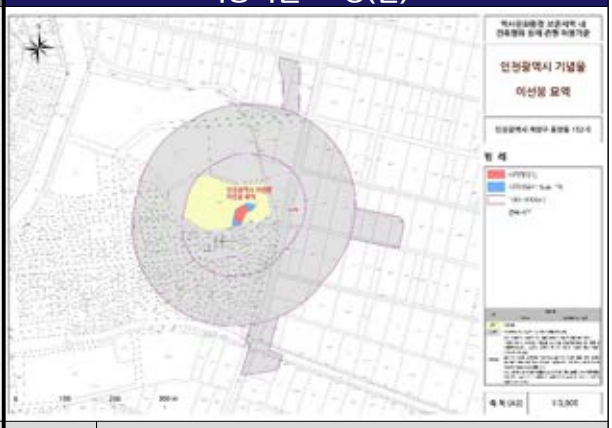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 rowspan="3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/tr>
<tr><td>3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9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(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)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
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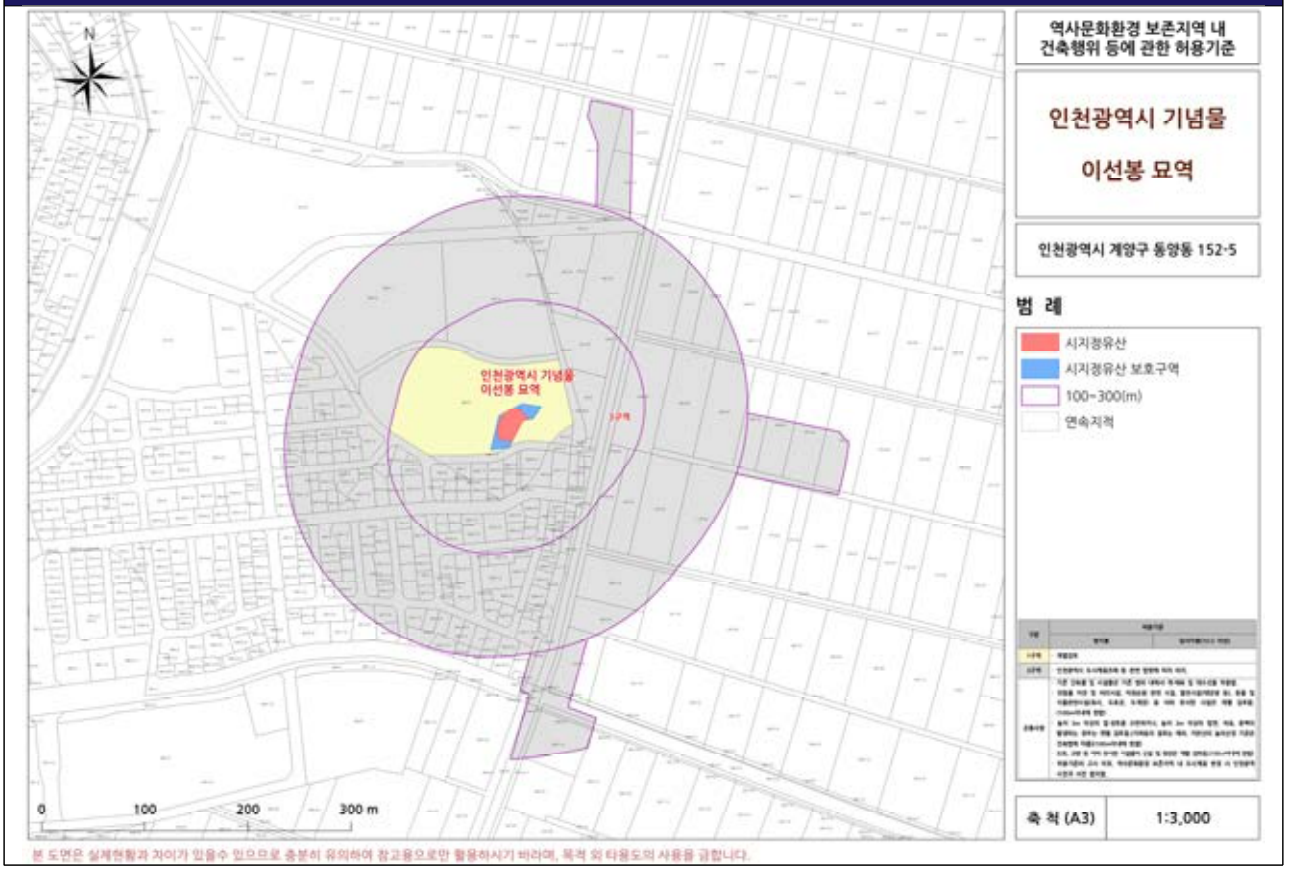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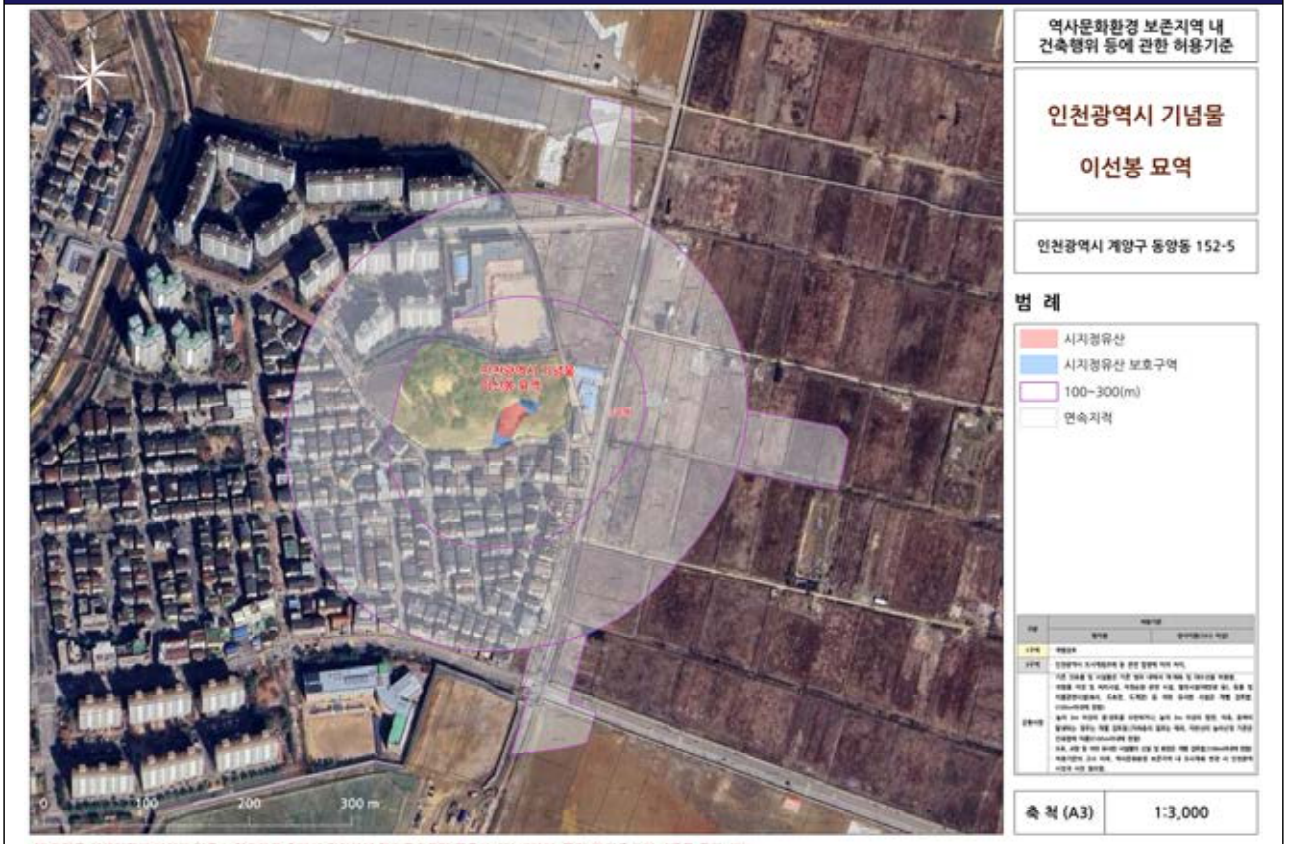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5. 서구

■ 심즙 신도비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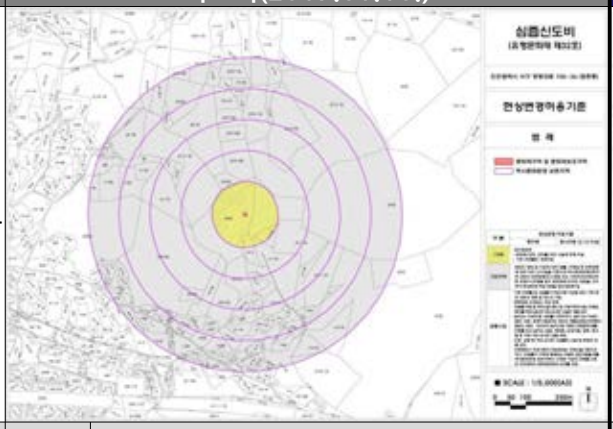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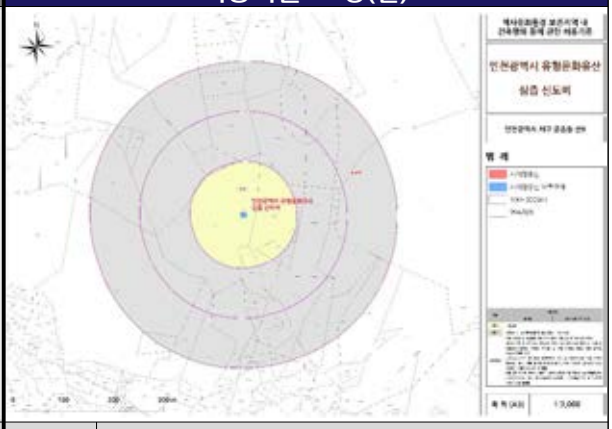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,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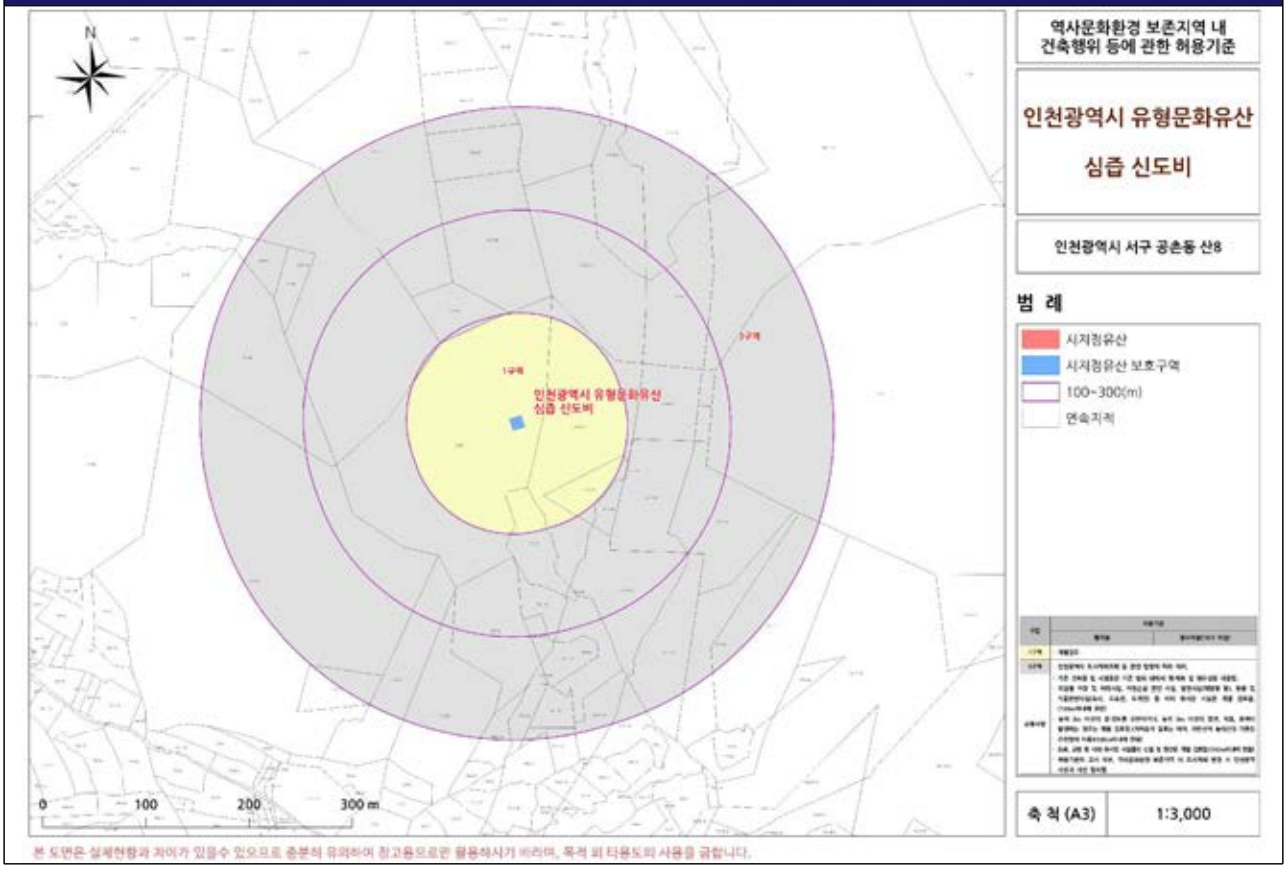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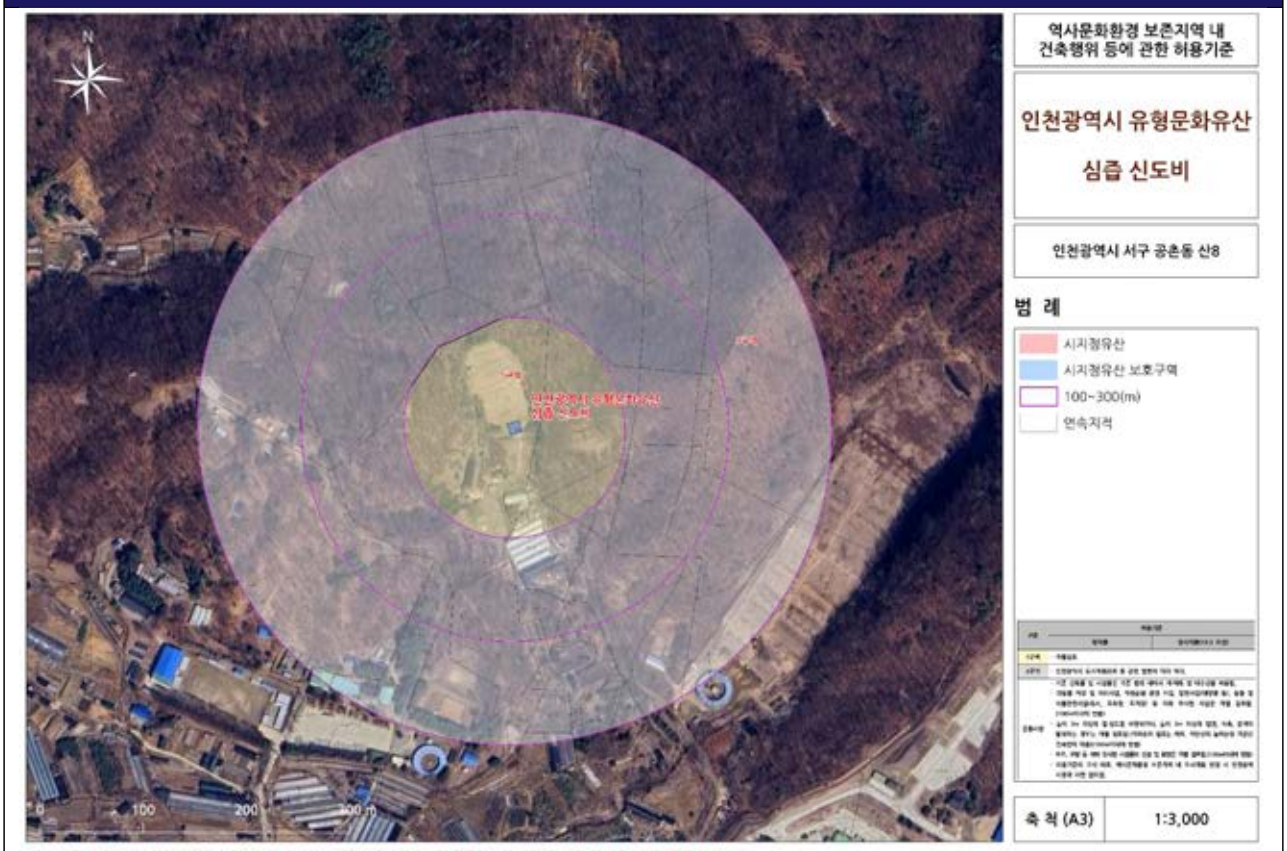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류사눌 묘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0.04.14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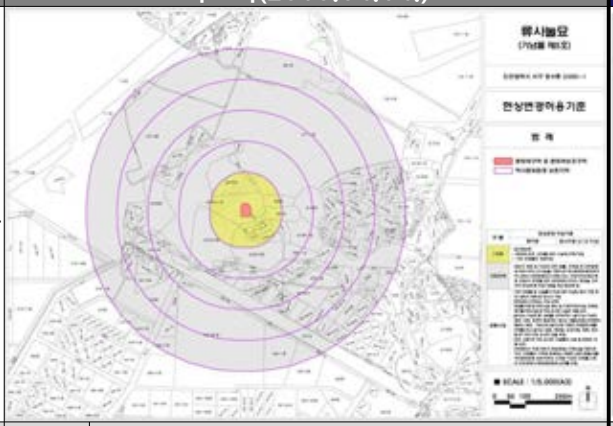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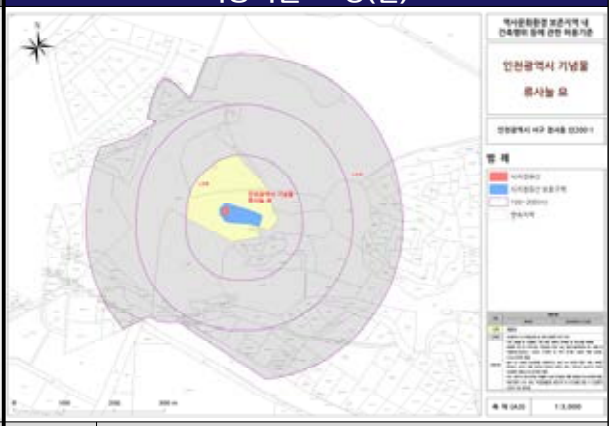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
◦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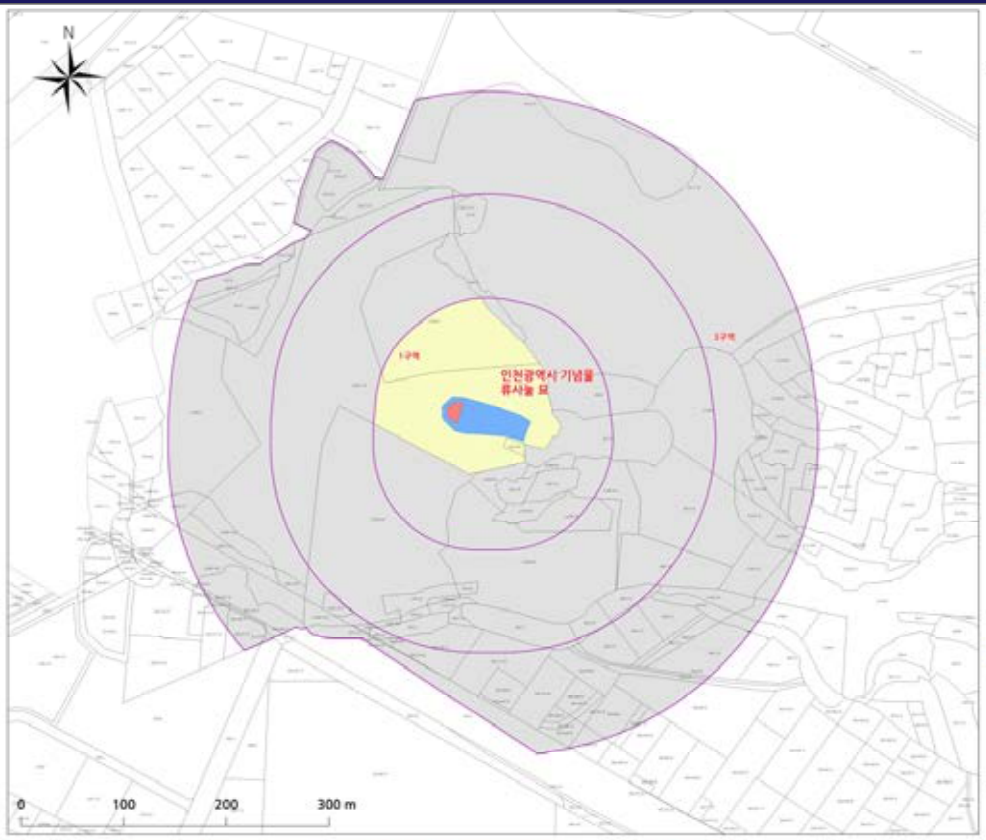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류사눌 묘

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00-1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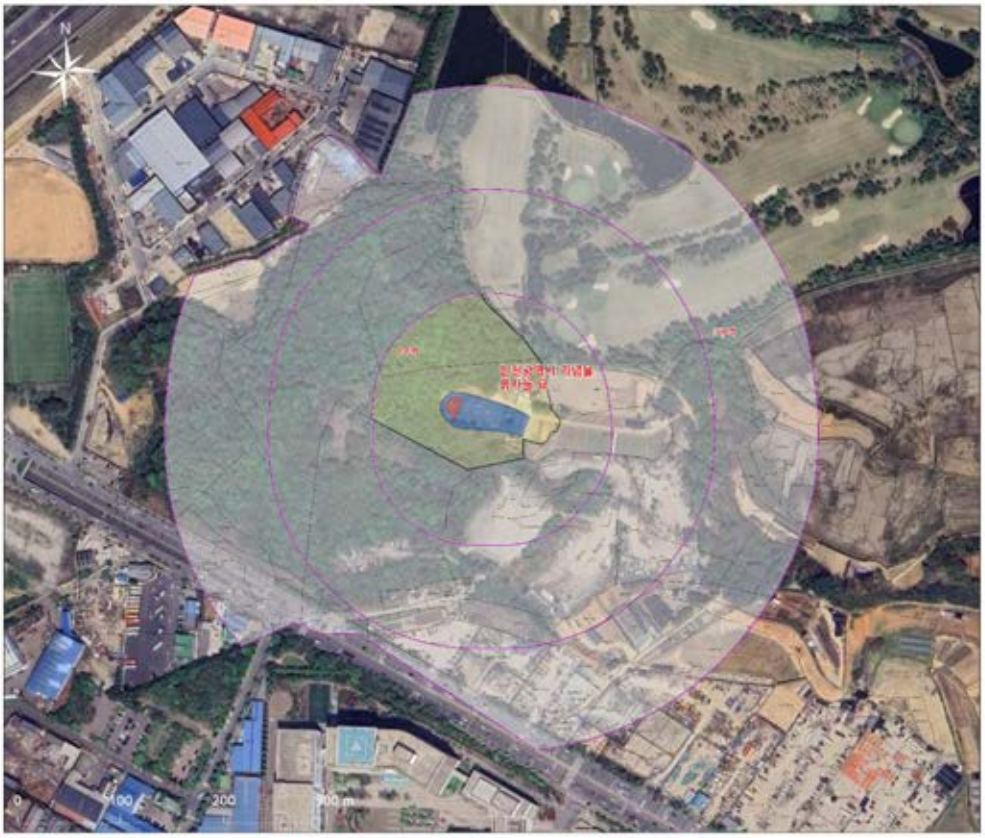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류사눌 묘

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00-1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대곡동 고인돌군 외1개소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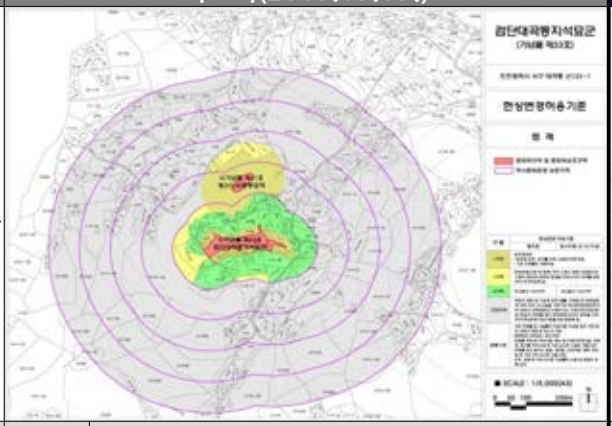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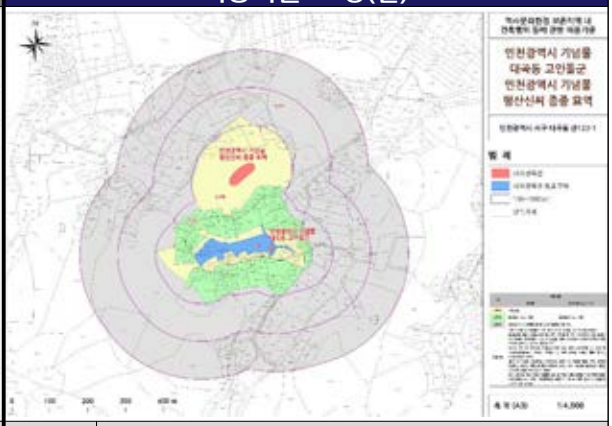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3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4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6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4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6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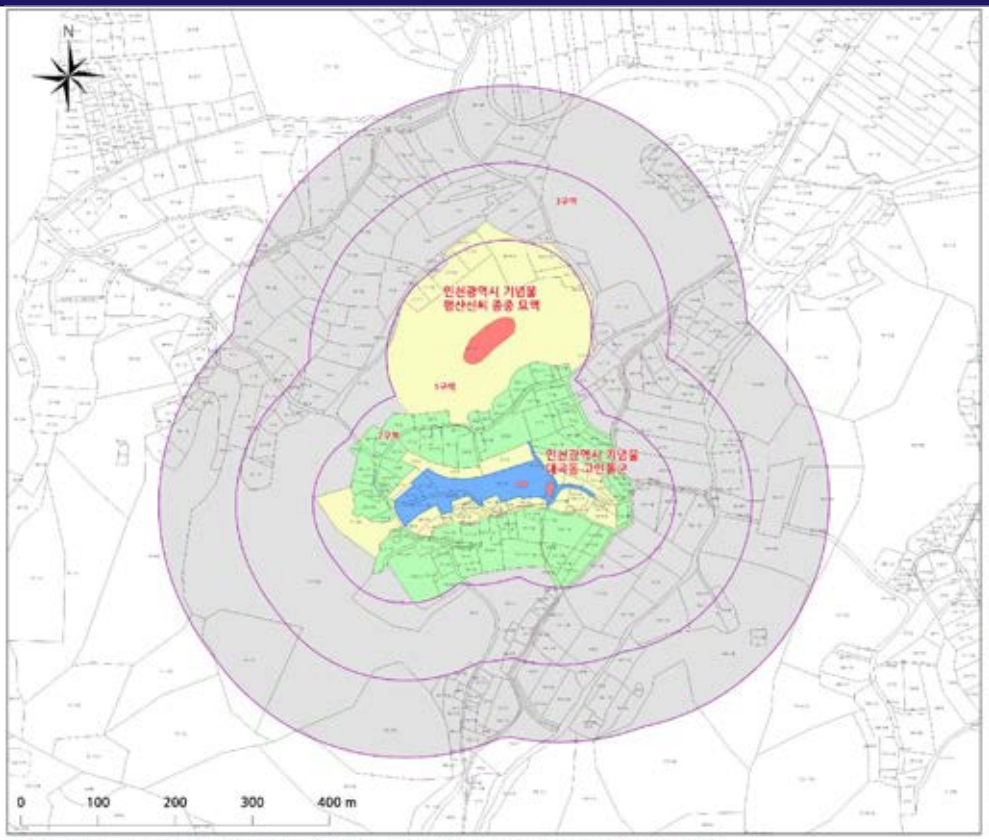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대곡동 고인돌군
인천광역시 기념물
평산신씨 종중 묘역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-1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4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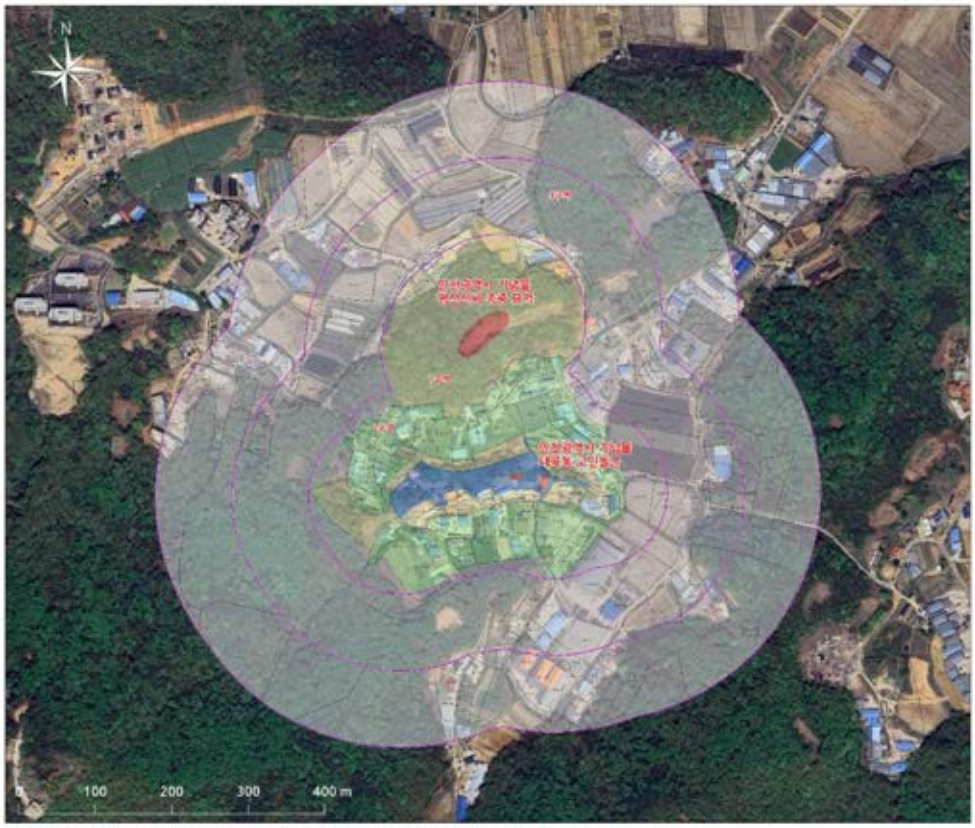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대곡동 고인돌군
인천광역시 기념물
평산신씨 종중 묘역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-1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4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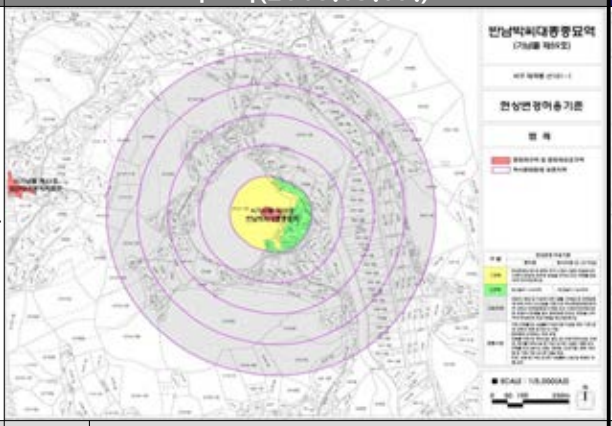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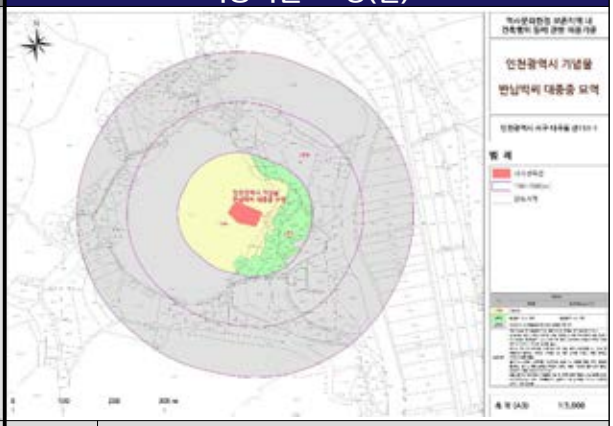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1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3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11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5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1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1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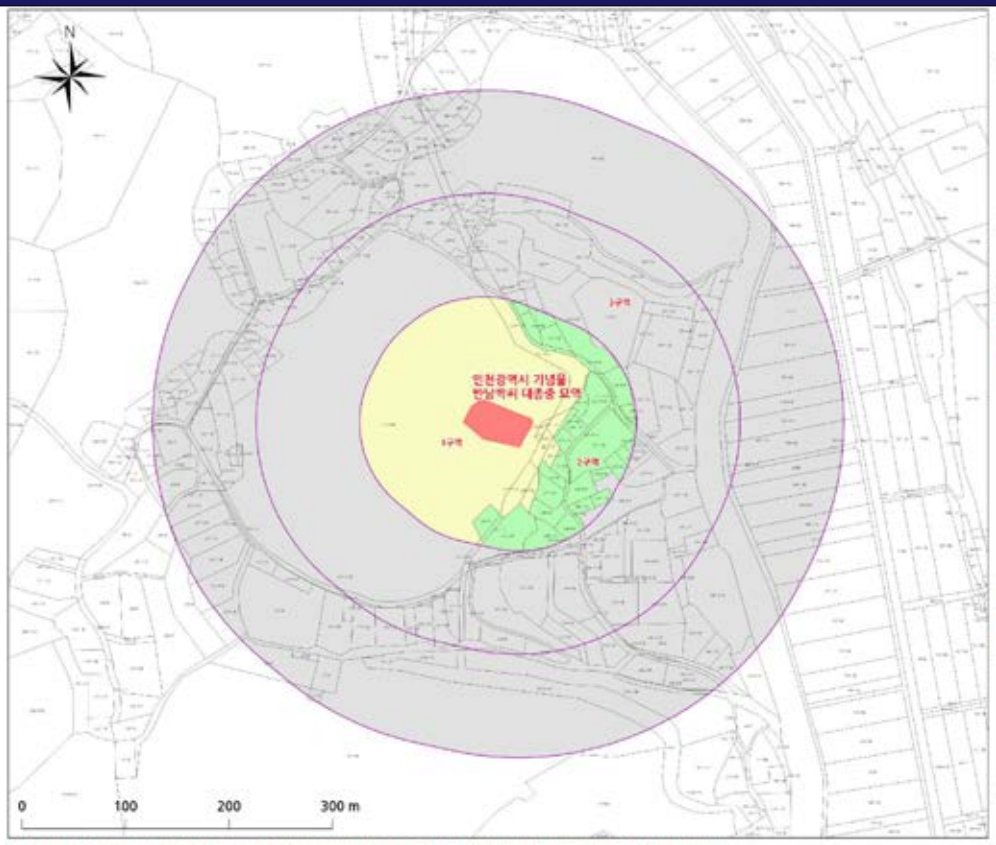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
반남박씨 대종중 묘역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51-1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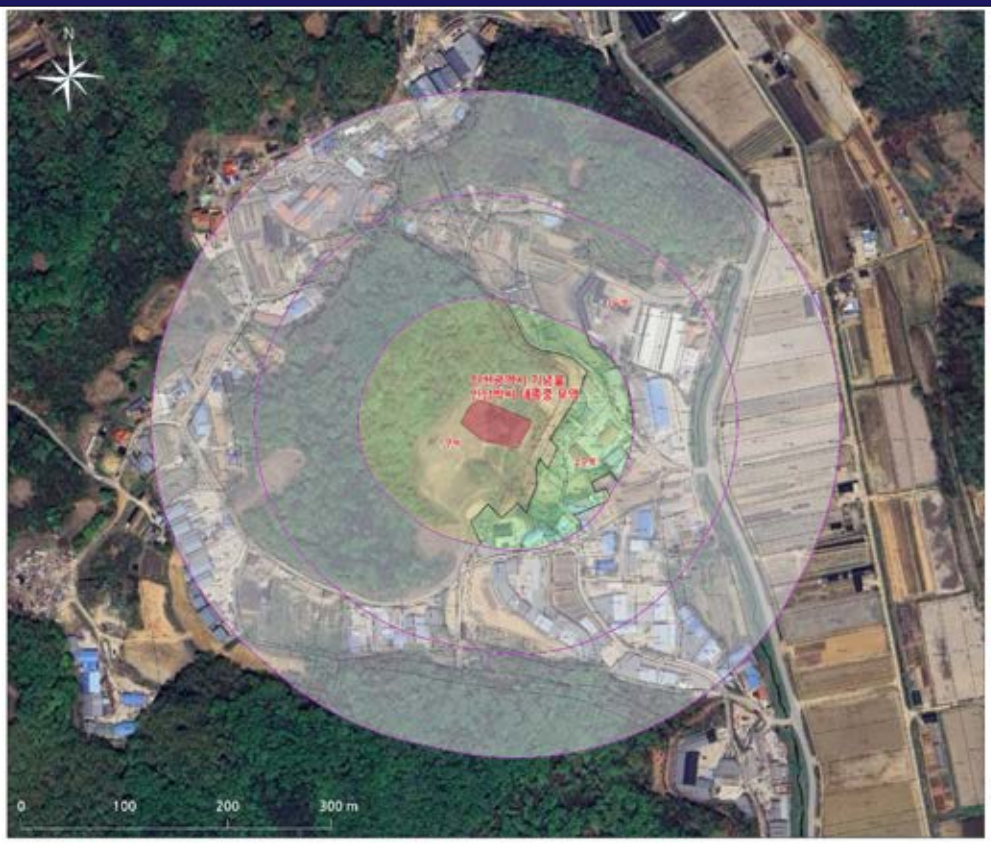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
반남박씨 대종중 묘역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51-1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김안정 묘 및 묘비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24.06.10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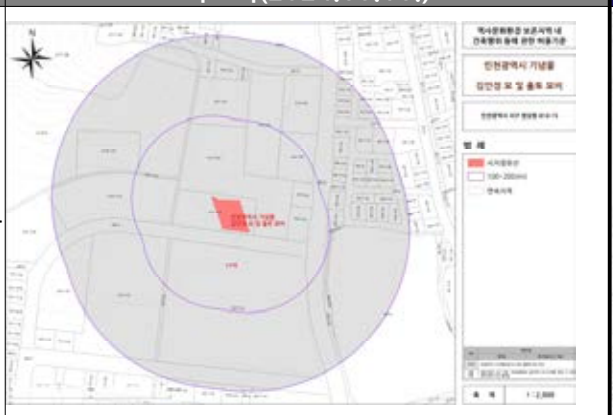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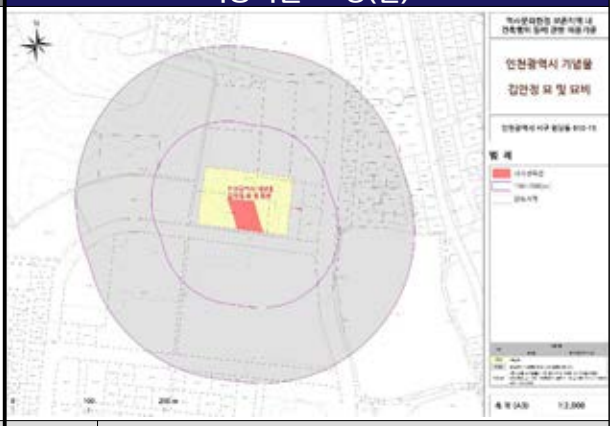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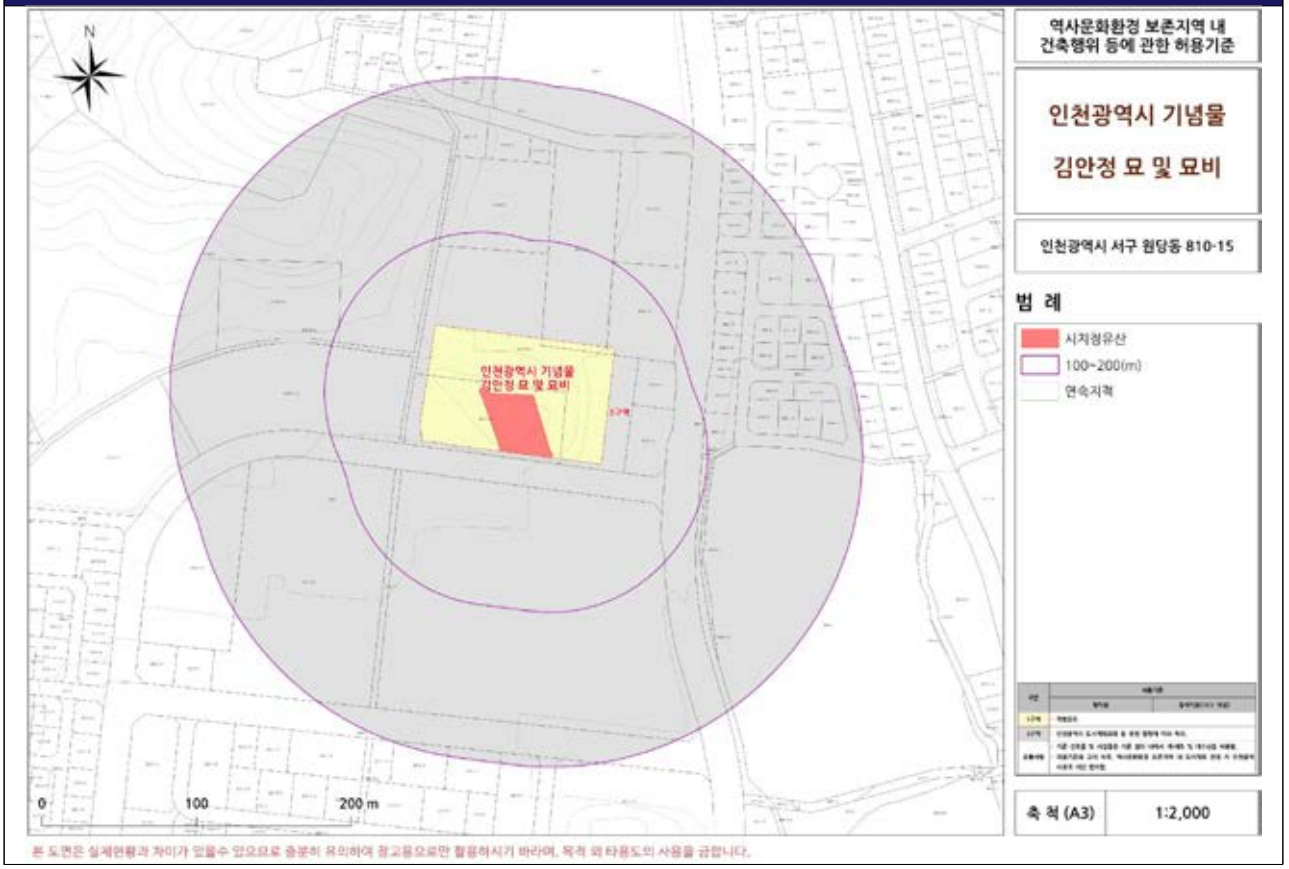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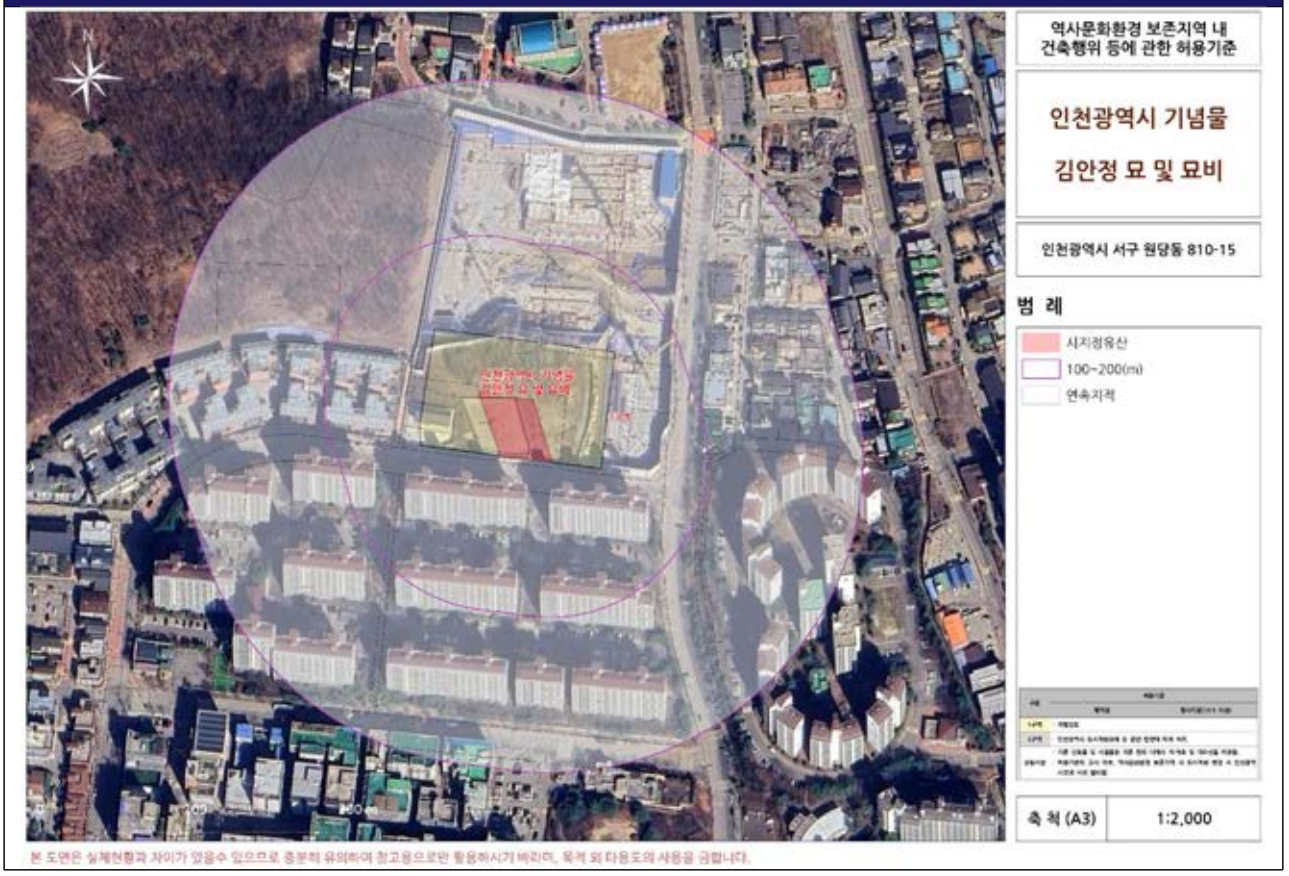

6. 강화군

■ 강화 보문사 석실 외 2개소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21.07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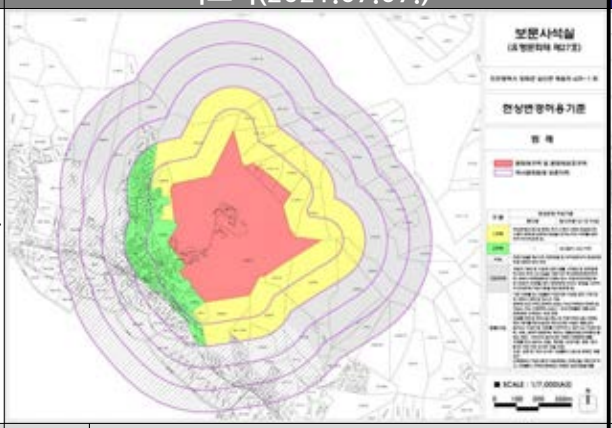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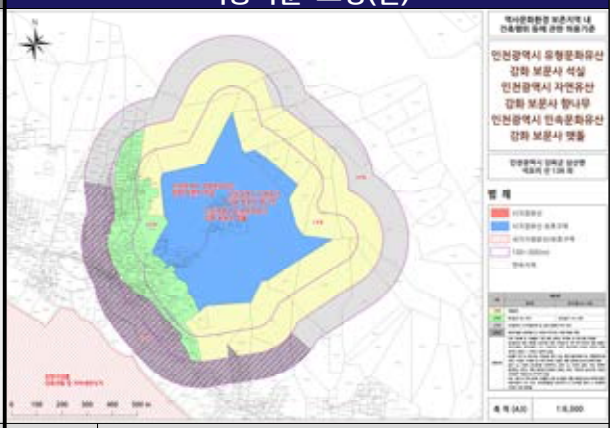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2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 colspan="2">◦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</td><td>4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의 허용기준을 따름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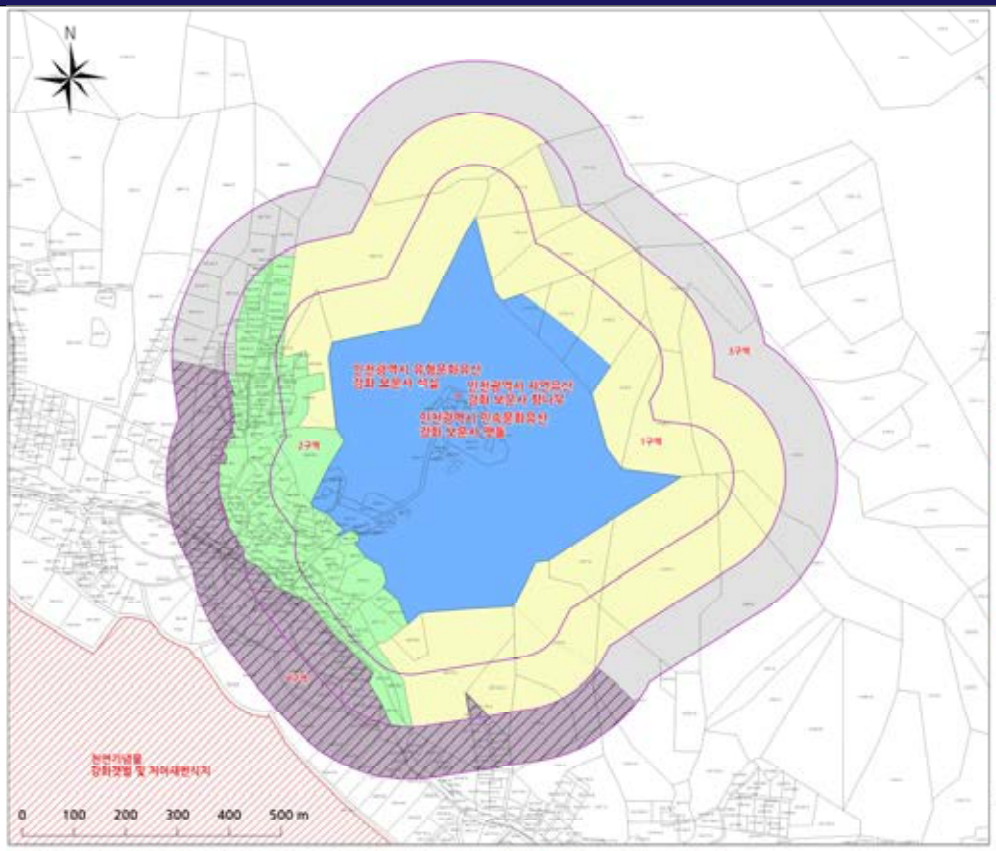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
강화 보문사 석실
인천광역시 자연유산
강화 보문사 향나무
인천광역시 민속문화유산
강화 보문사 맷돌

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
석모리 산 136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
강화 보문사 석실
인천광역시 자연유산
강화 보문사 향나무
인천광역시 민속문화유산
강화 보문사 맷돌

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
석모리 산 136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강화 삼암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21.07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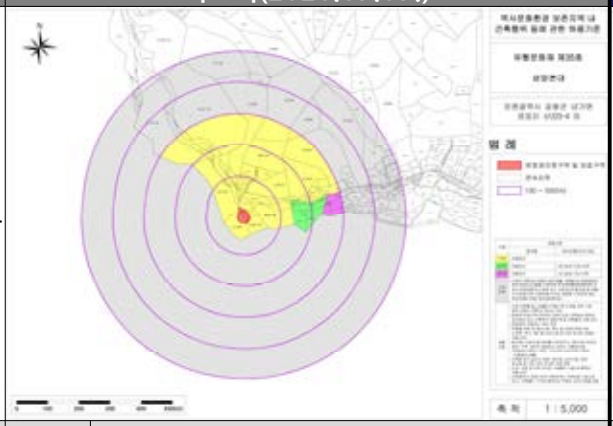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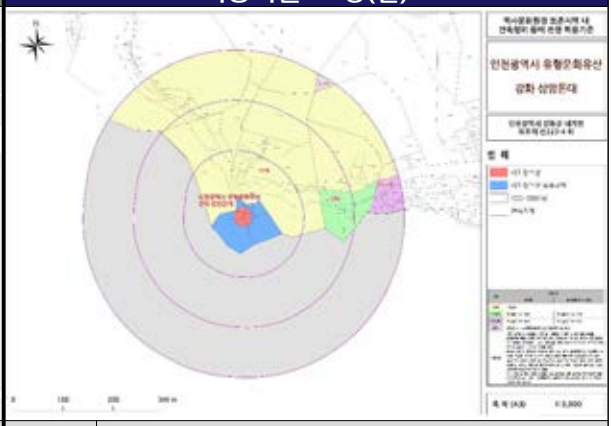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심의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◦ 개별심의</td><td>◦ 최고높이 5.5m 이하</td><td>2-1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5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3구역</td><td>◦ 개별심의</td><td>◦ 최고높이 13m 이하</td><td>2-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2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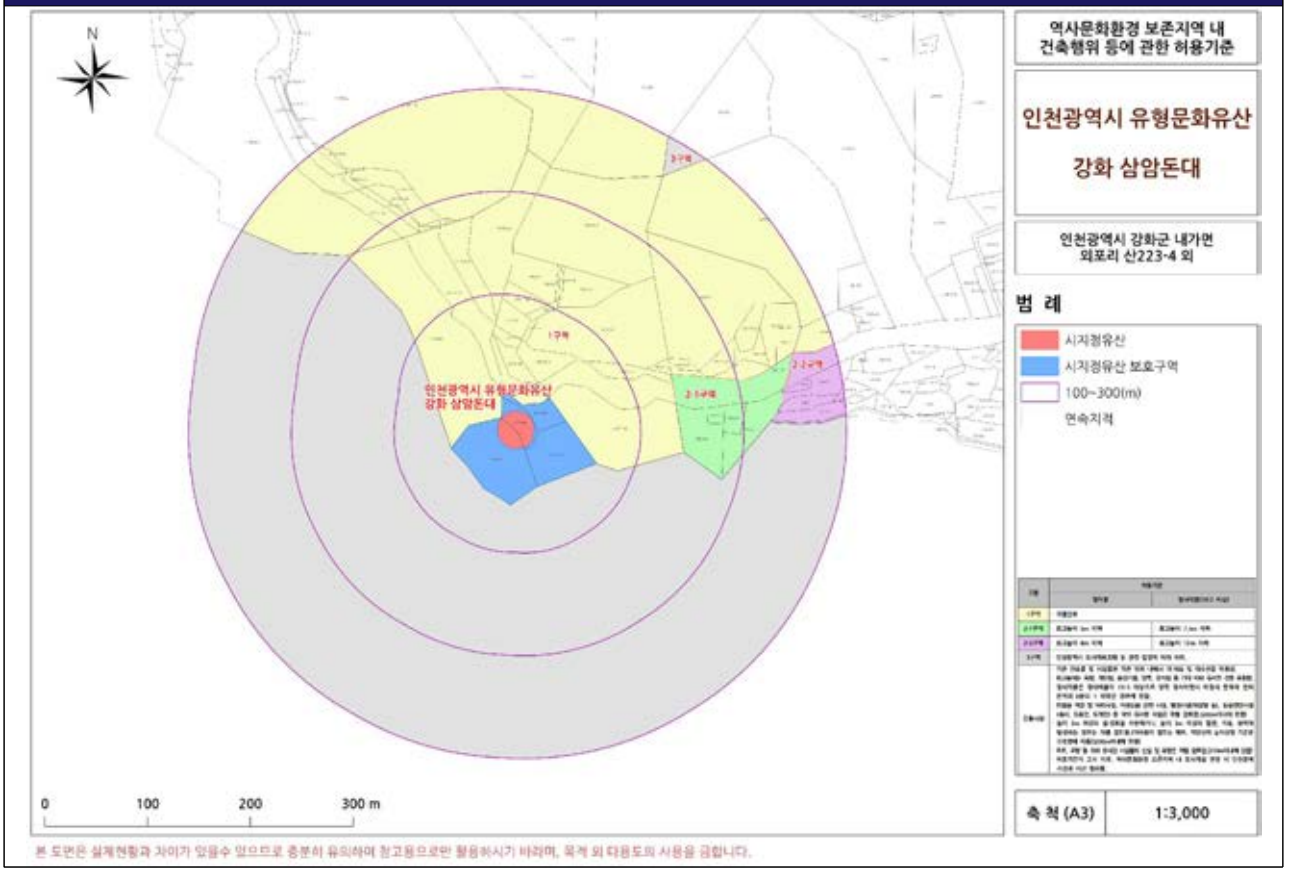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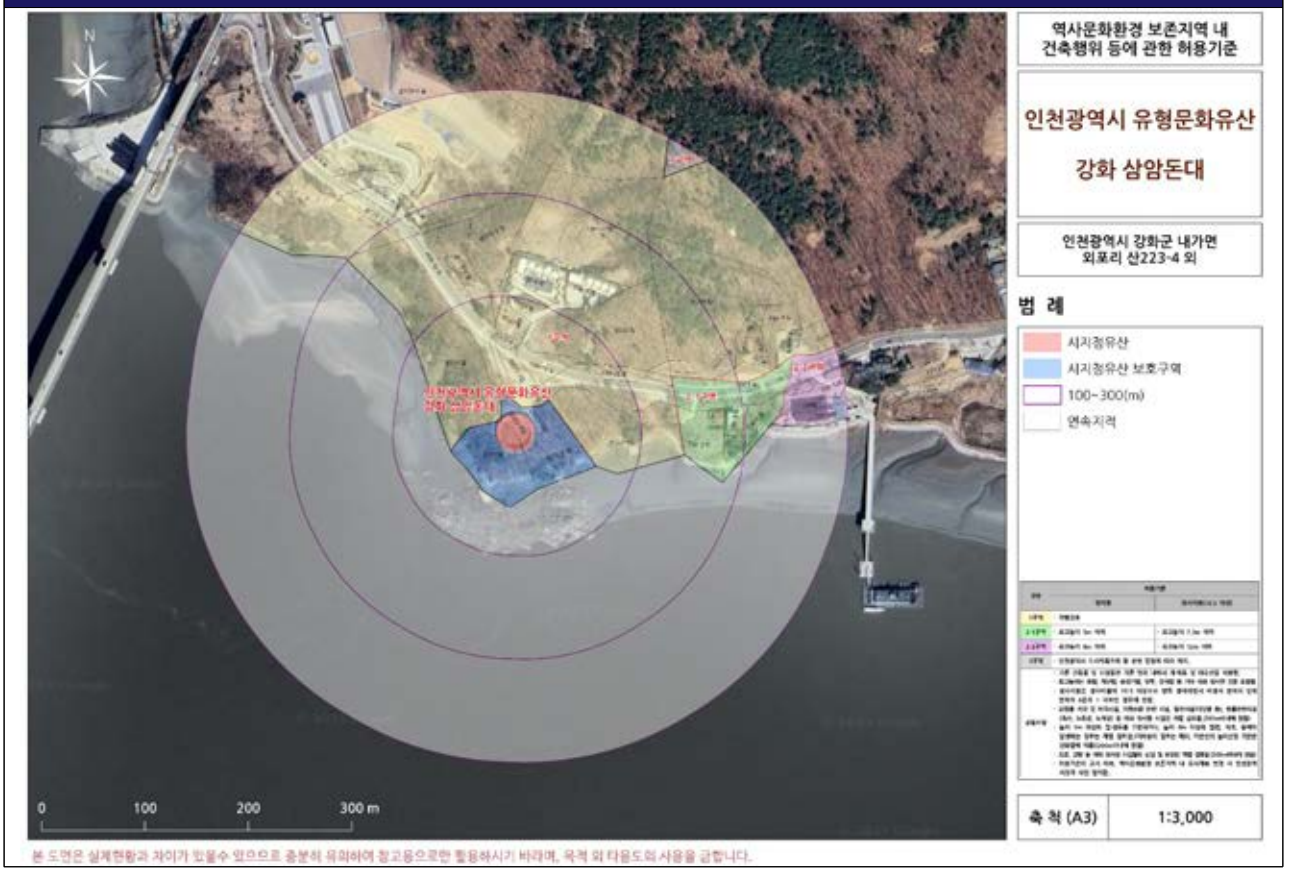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강화 적석사 사적비 외 2개소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21.07.07.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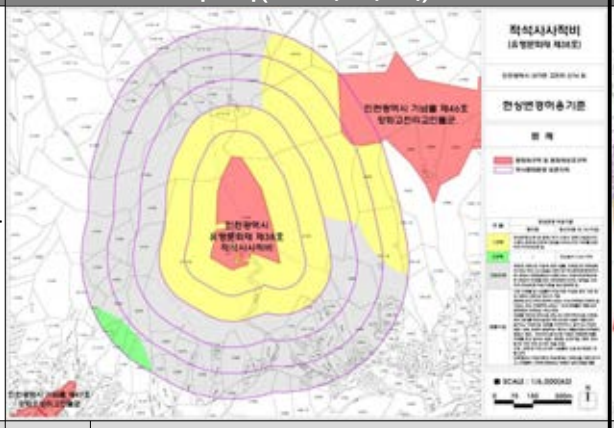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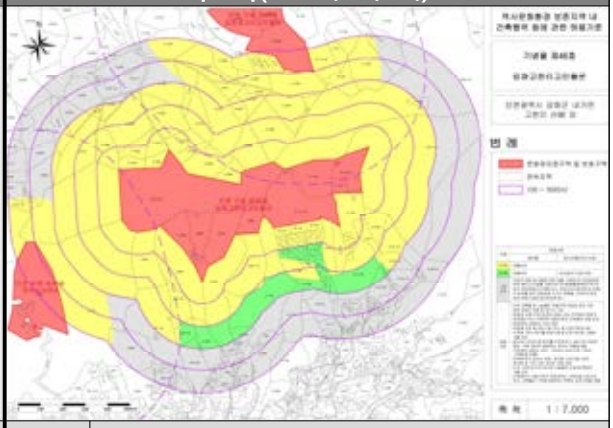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심의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개별심의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24.06.10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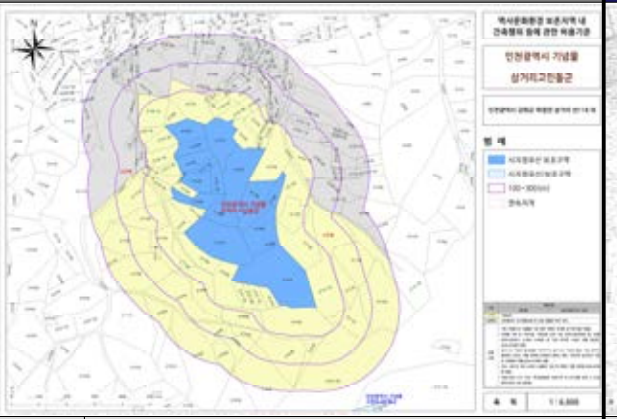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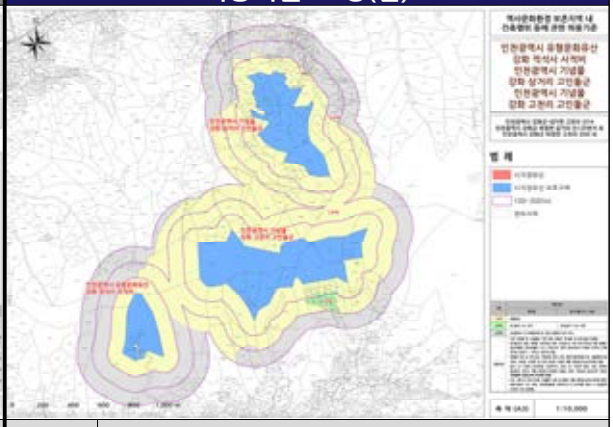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td>1구역
2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
◦ 최고높이 5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
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td>공통
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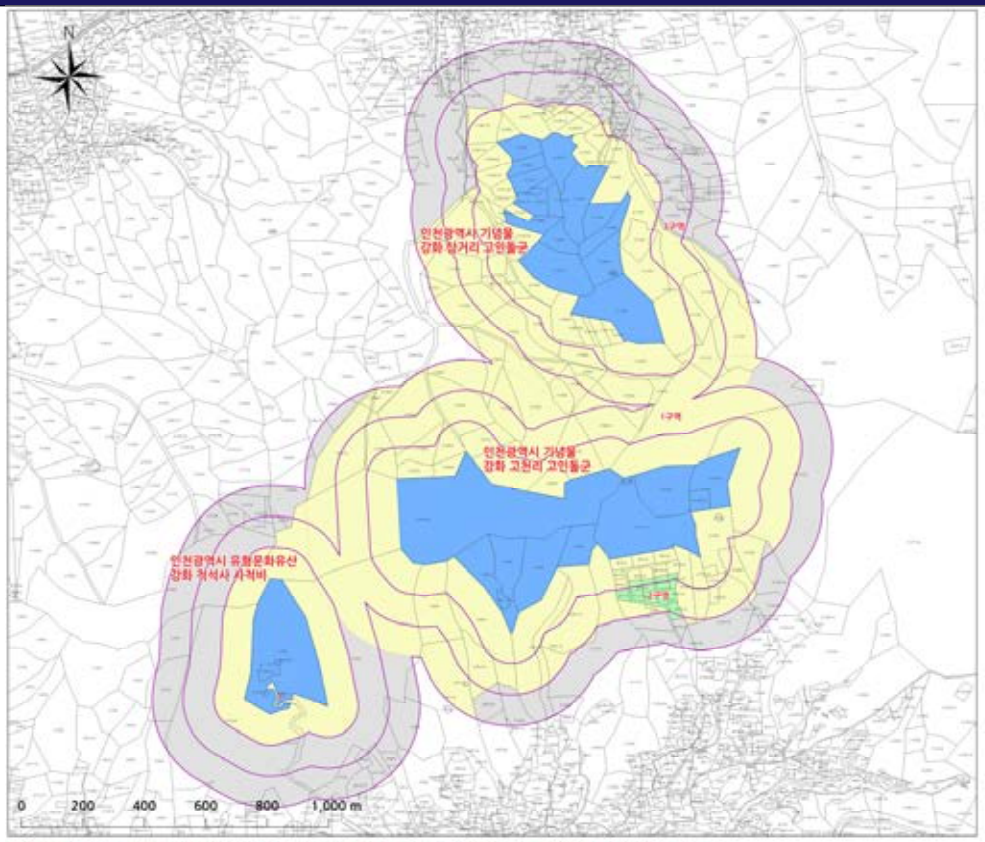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
강화 적석사 사적비
인천광역시 기념물
강화 삼거리 고인돌군
인천광역시 기념물
강화 고천리 고인돌군

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74
인천광역시 강화군 화경면 삼거리 산120번지 외
인천광역시 강화군 화경면 고천리 산95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10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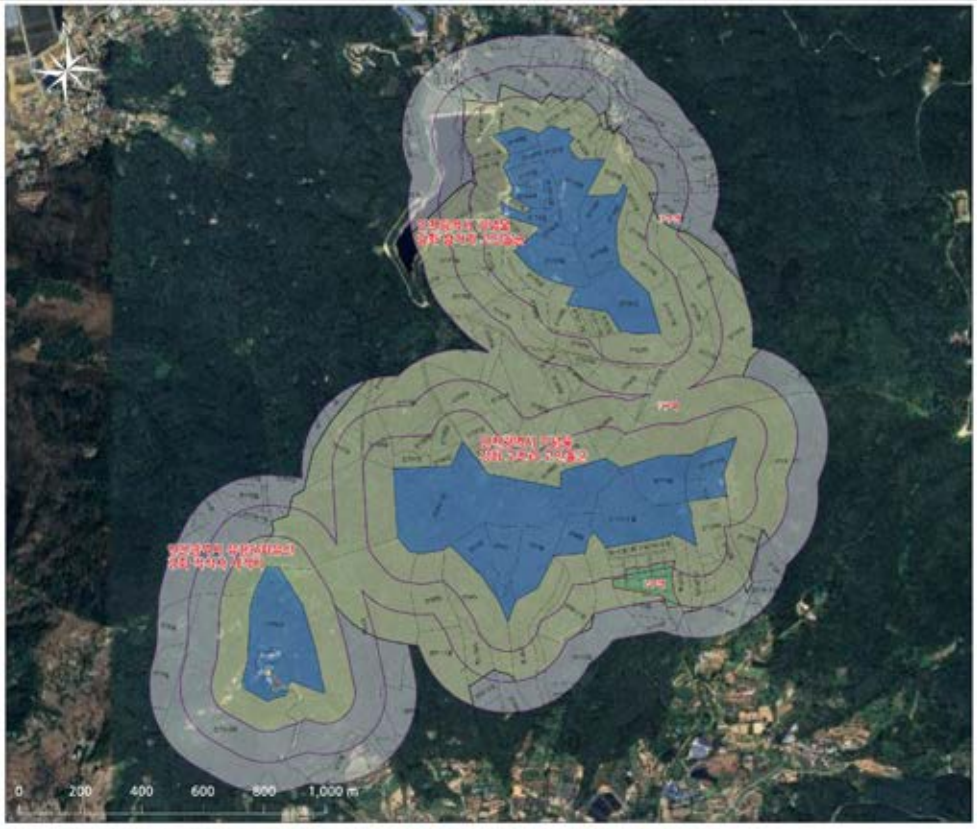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
강화 적석사 사적비
인천광역시 기념물
강화 삼거리 고인돌군
인천광역시 기념물
강화 고천리 고인돌군

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74
인천광역시 강화군 화경면 삼거리 산120번지 외
인천광역시 강화군 화경면 고천리 산95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10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이규보 묘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0.04.14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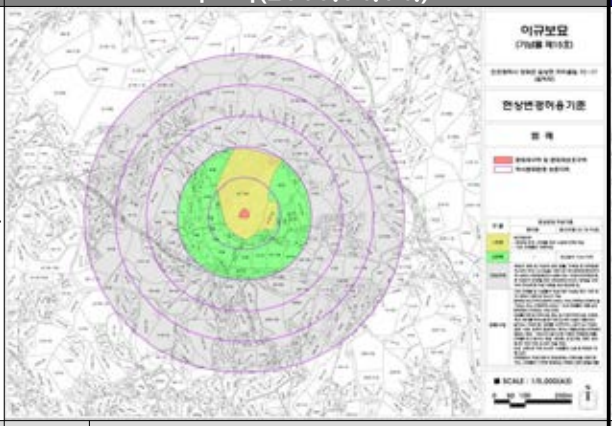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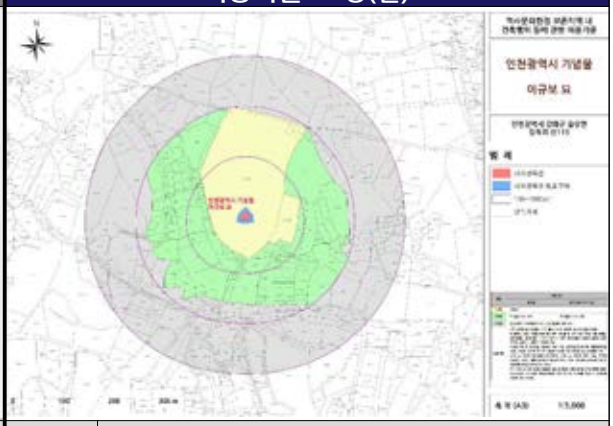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5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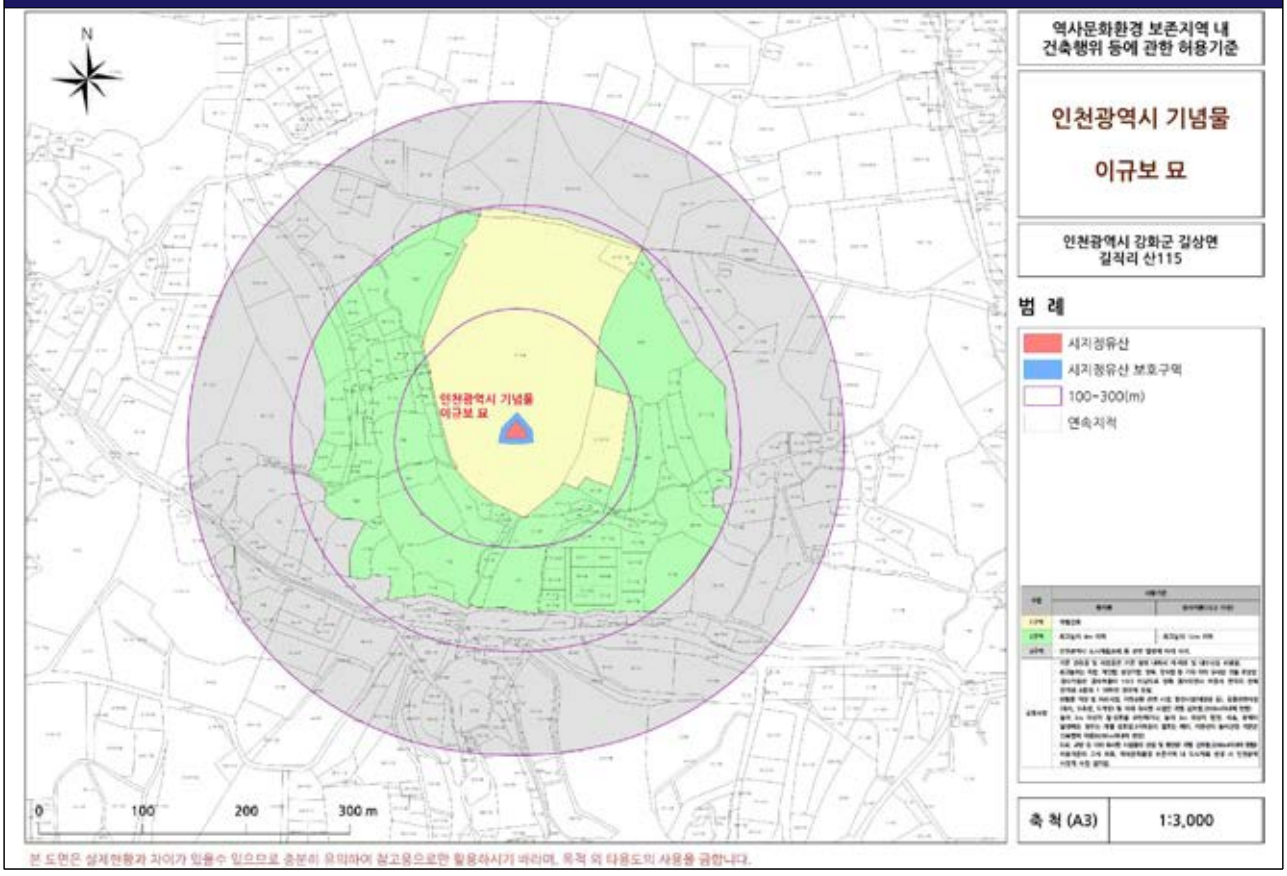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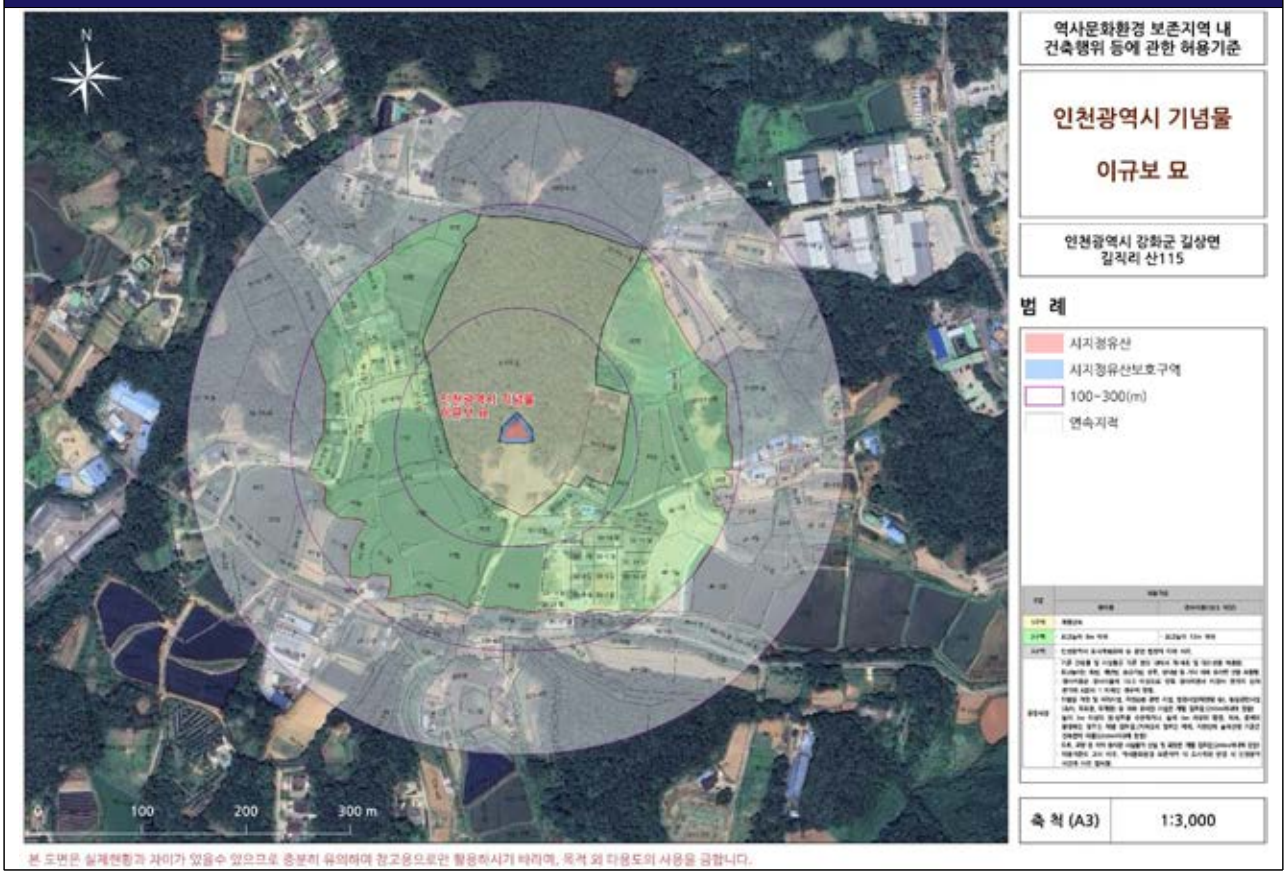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강화 봉천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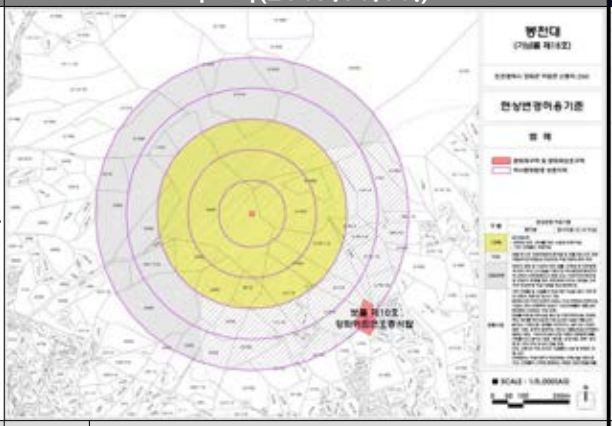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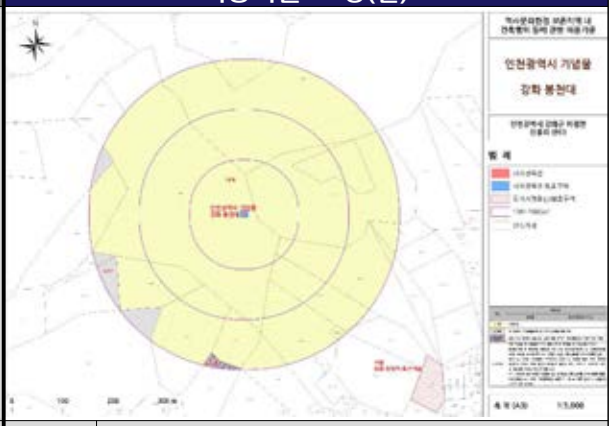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 colspan="2">◦ 보물 제10호 강화하점면오층석탑및 보물 제615호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</td><td>4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보물강화 장정리 오층석탑,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허용기준을 따름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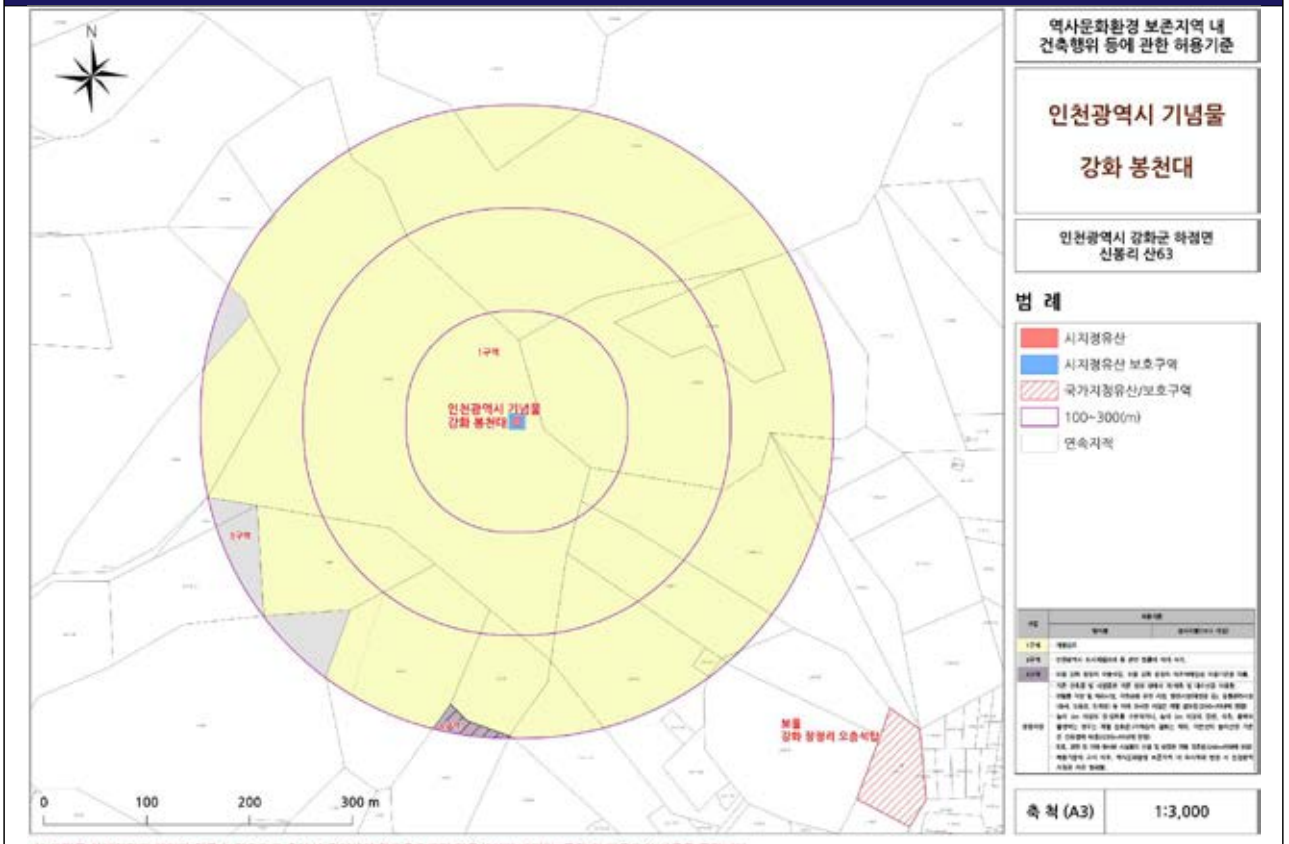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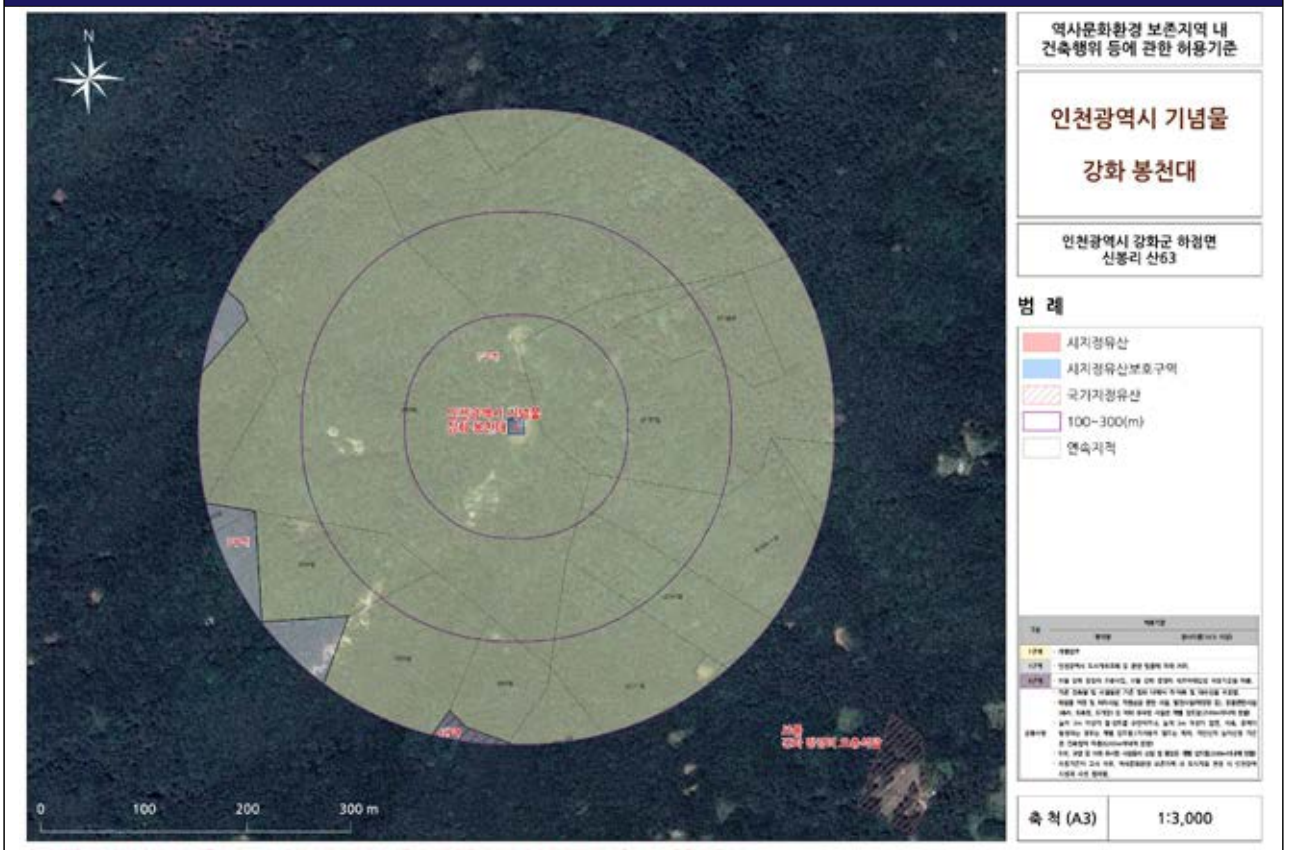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강화 계룡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7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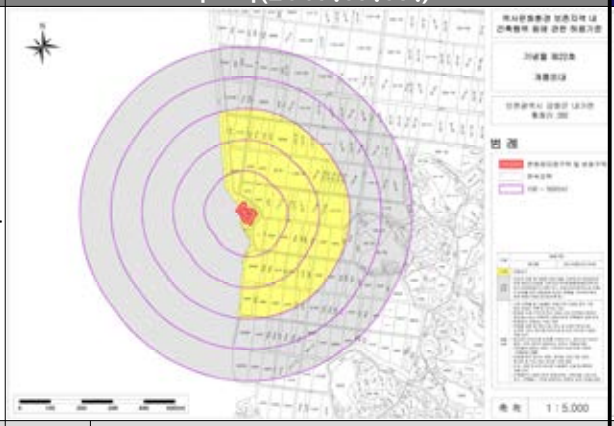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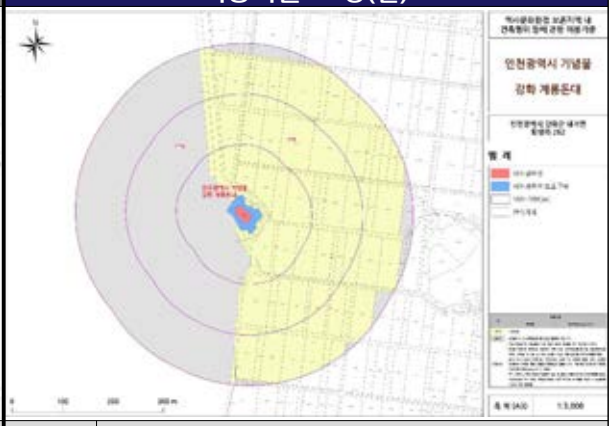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심의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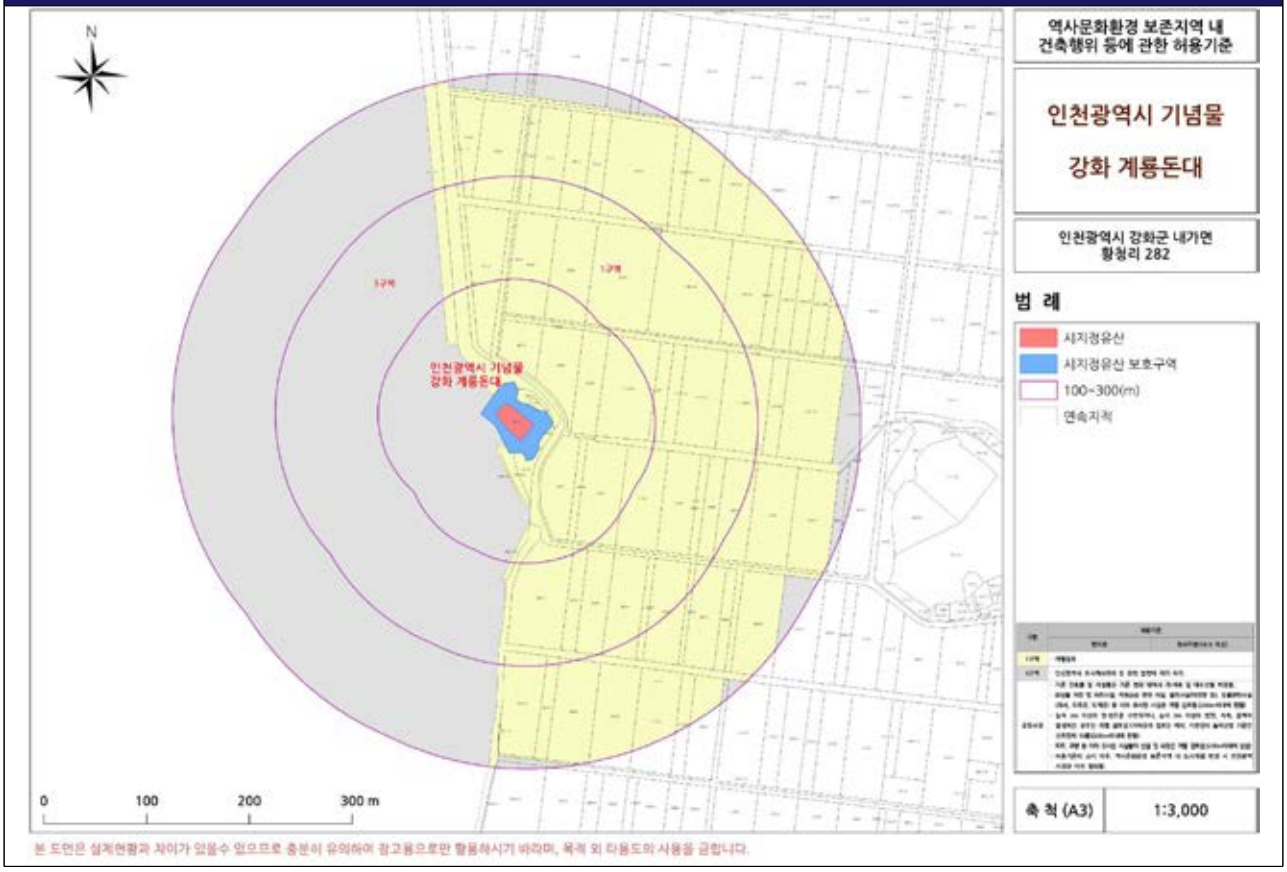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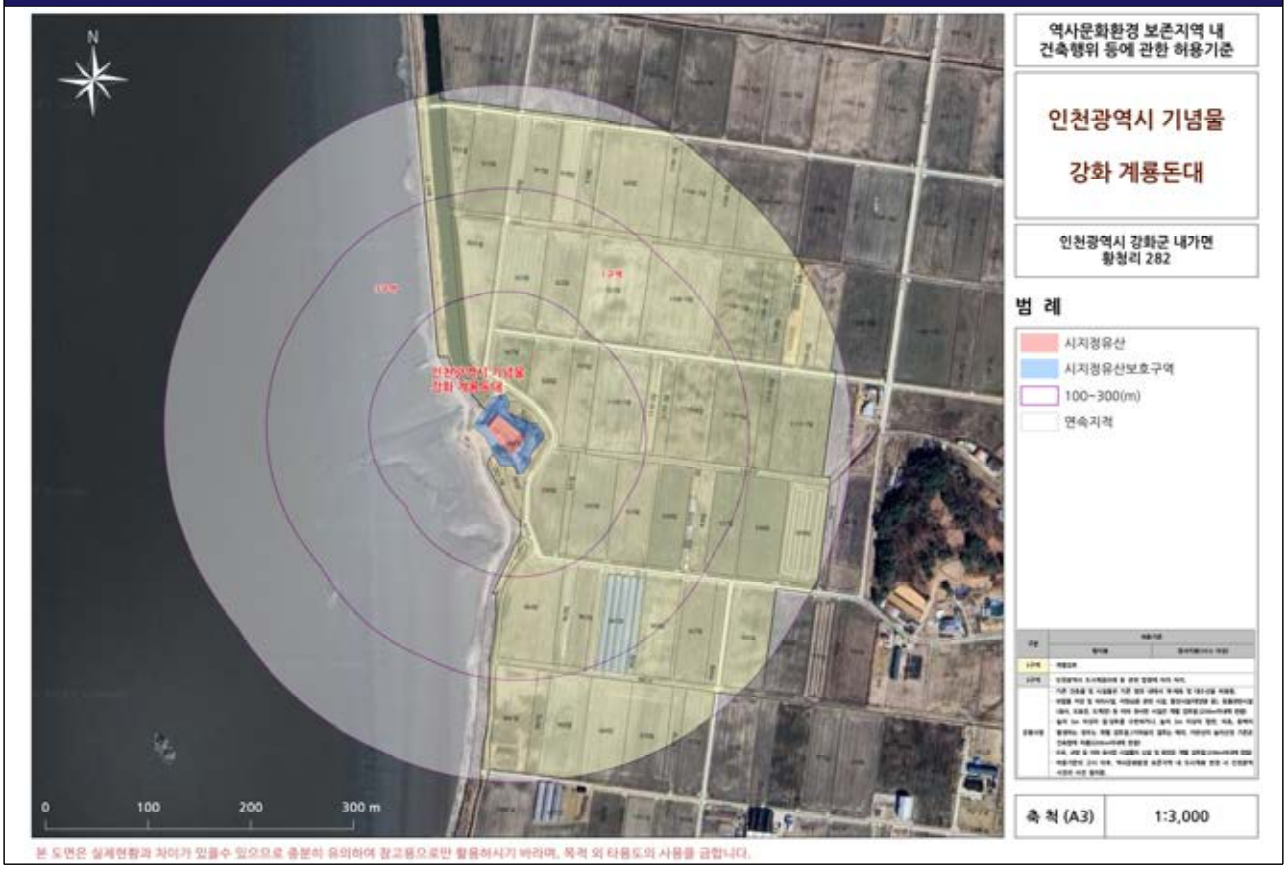

■ 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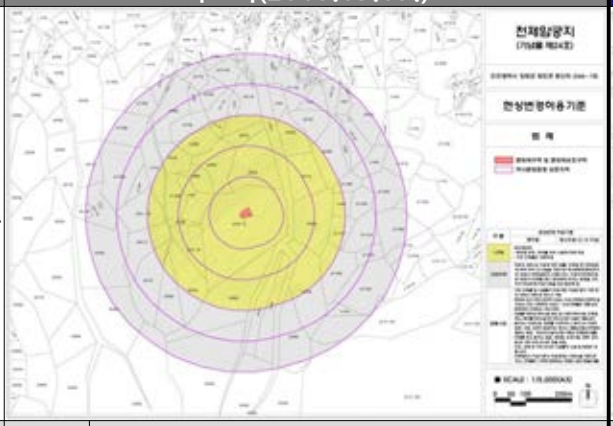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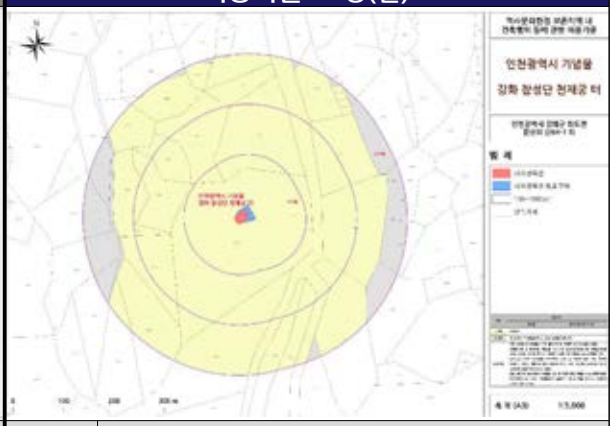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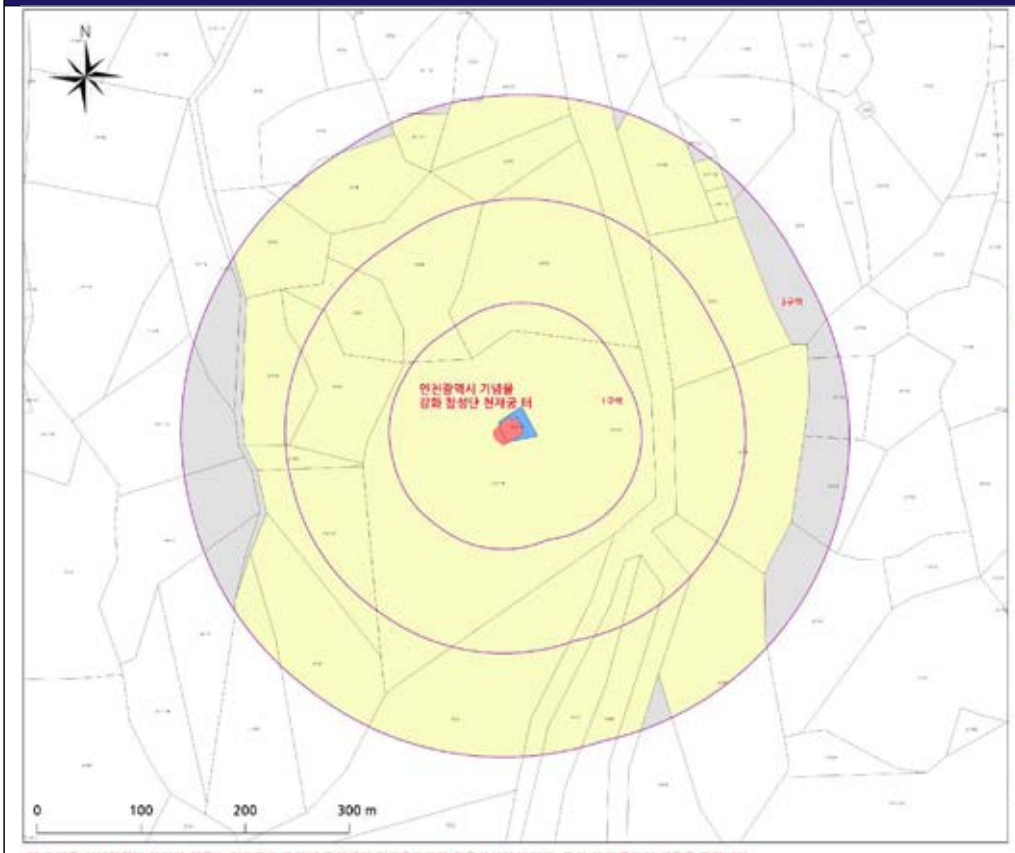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
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

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
문산리 산64-1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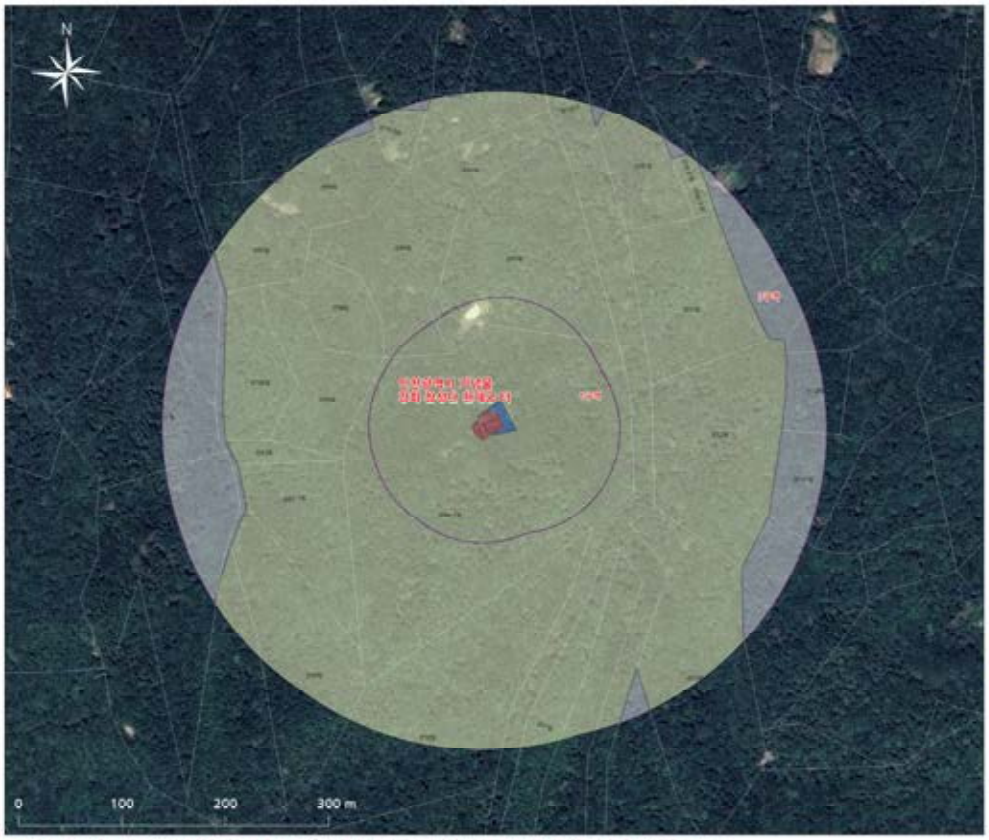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기념물

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

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
문산리 산64-1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허유전 묘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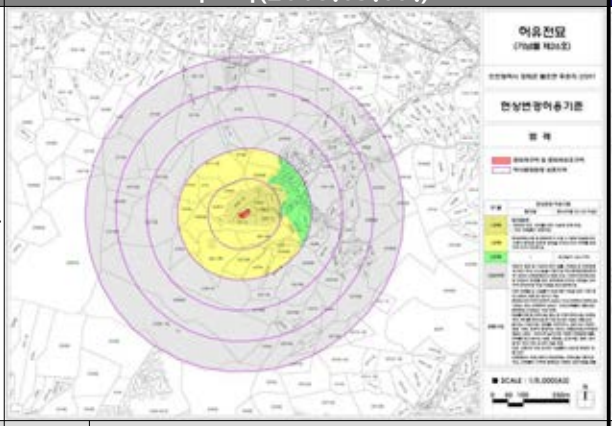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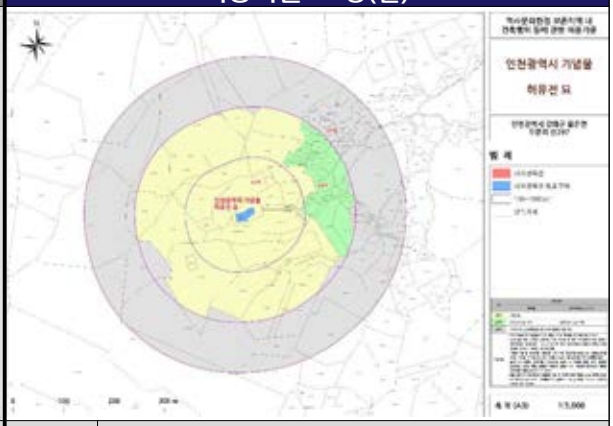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2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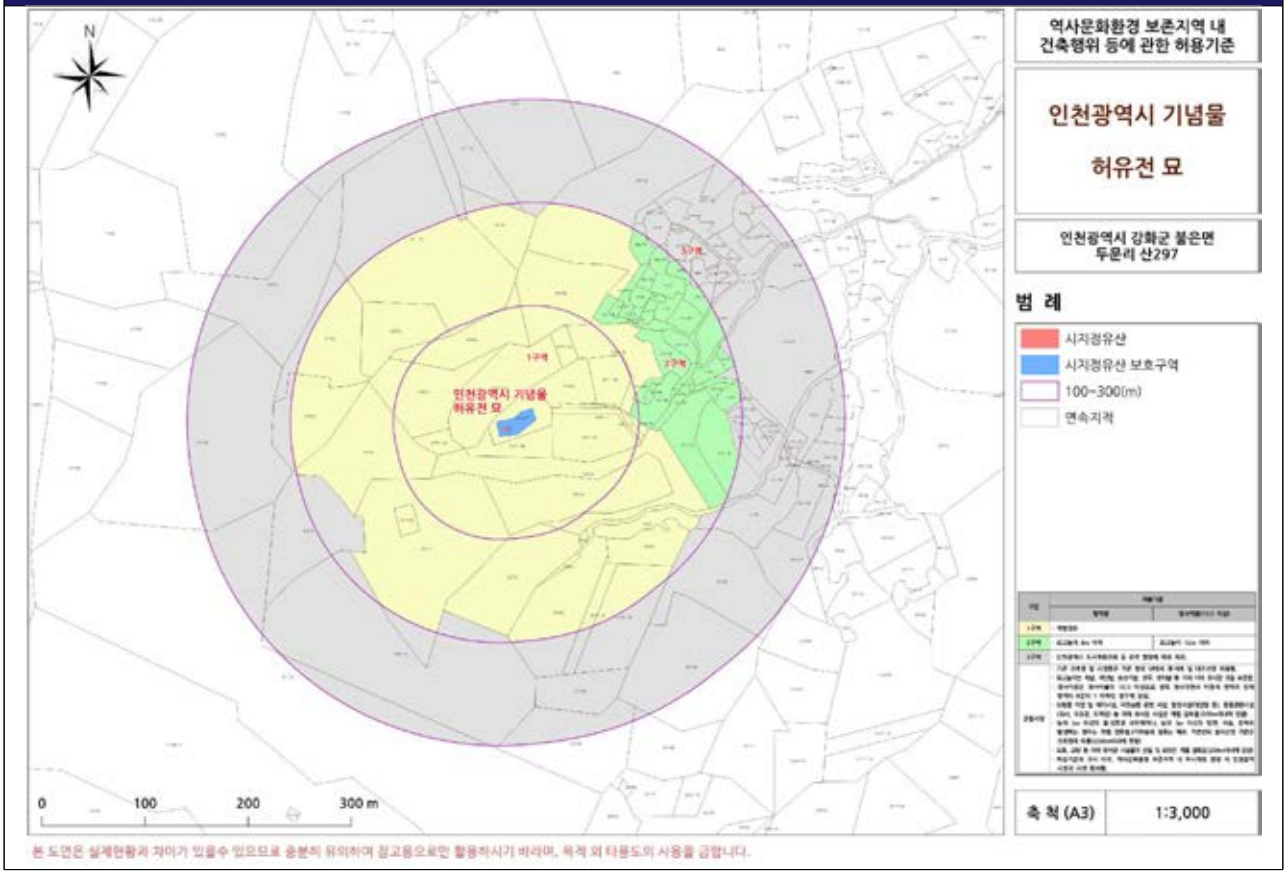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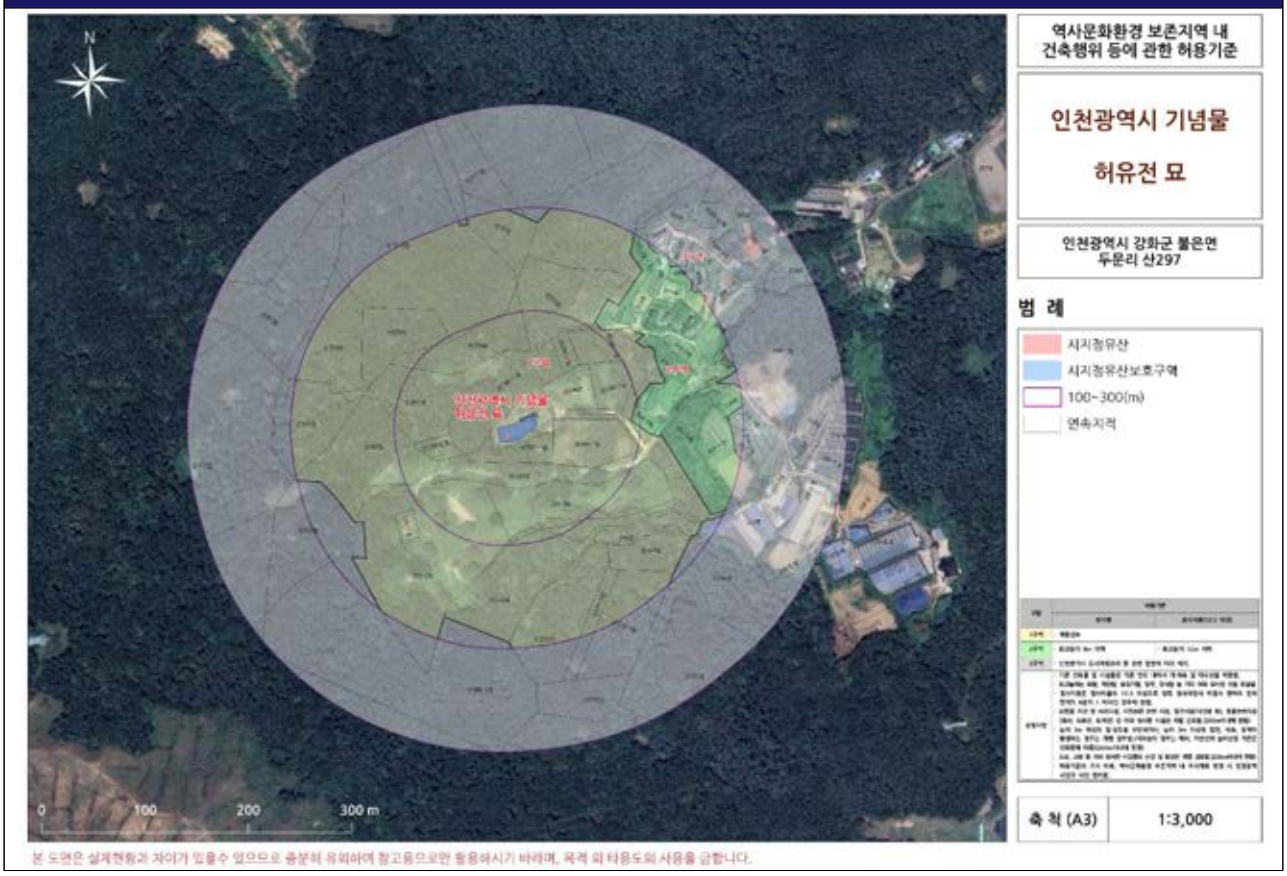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강화 인산리 석실분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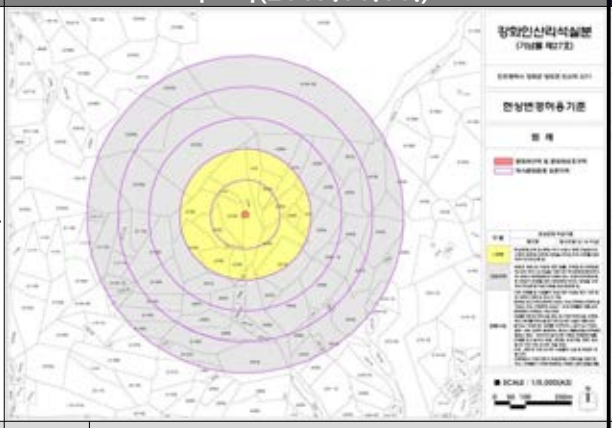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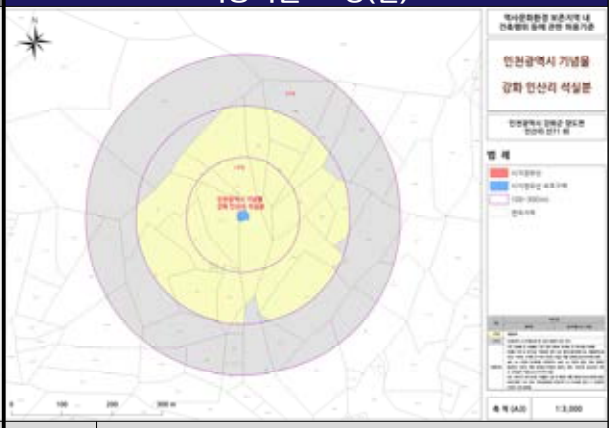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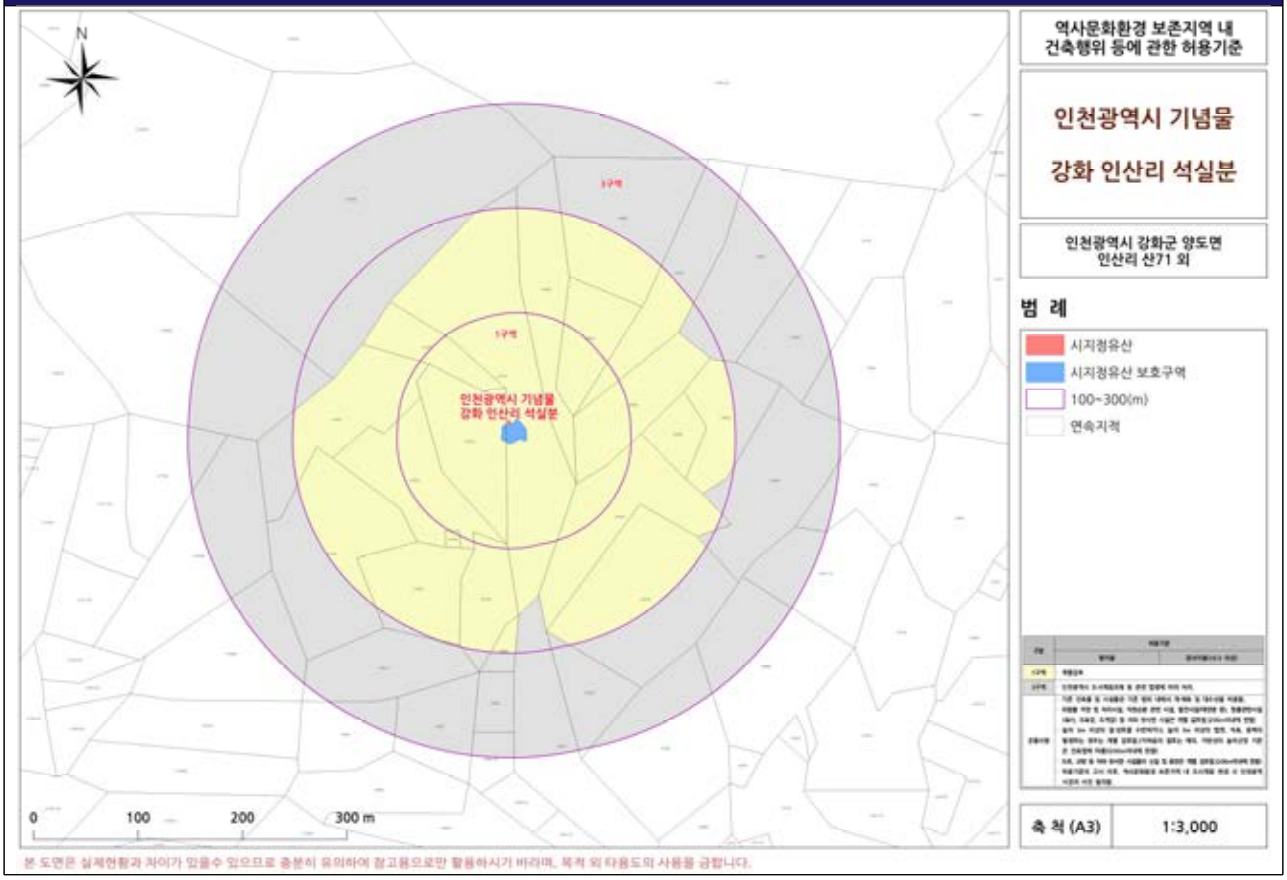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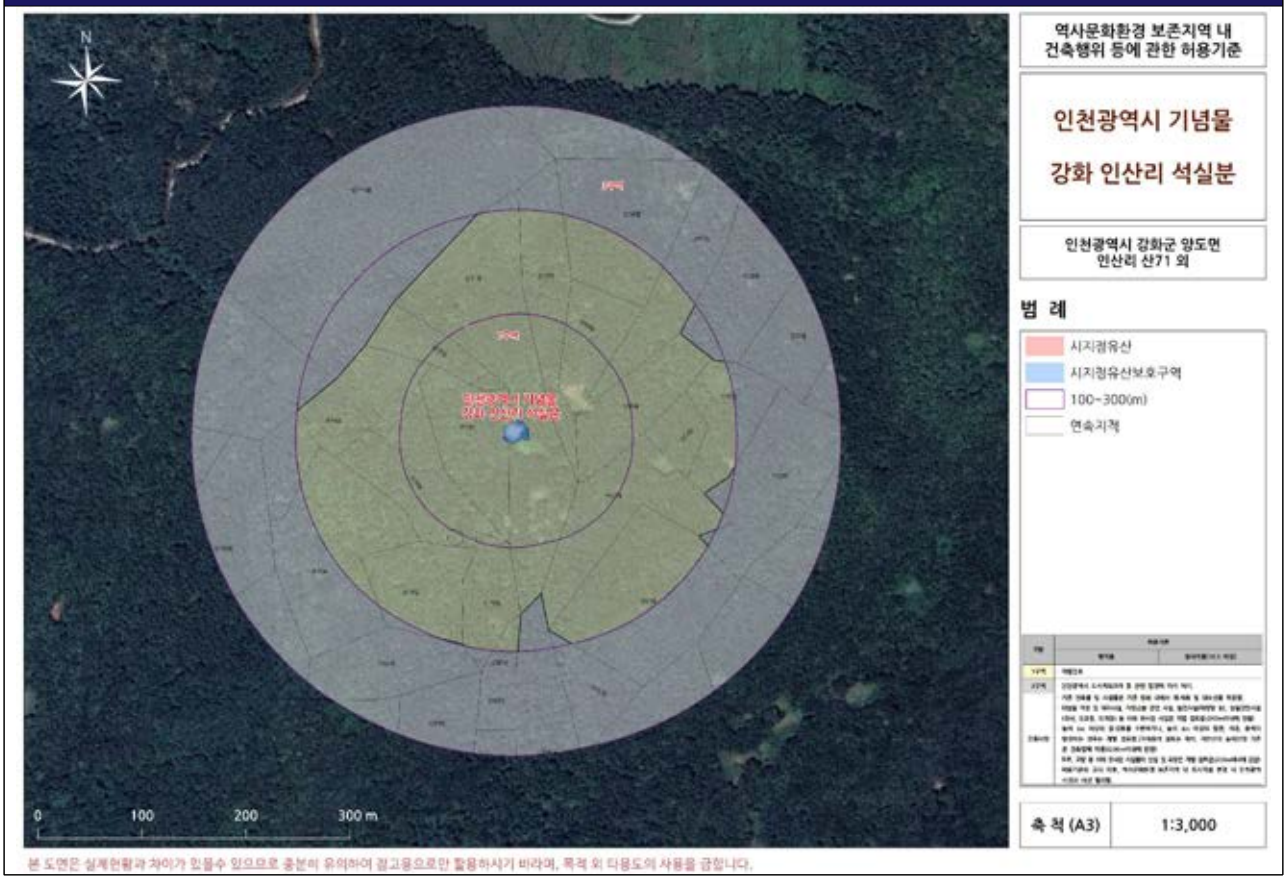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강화 건평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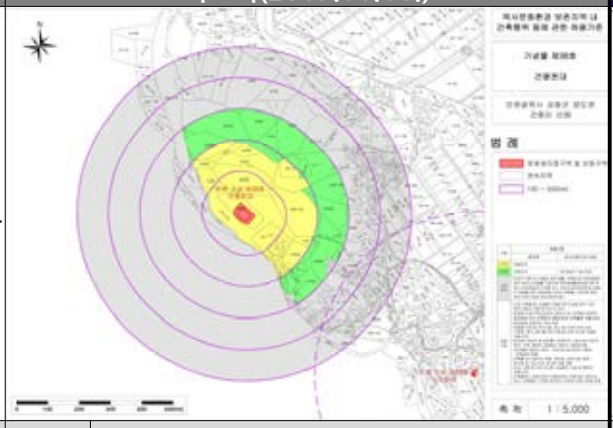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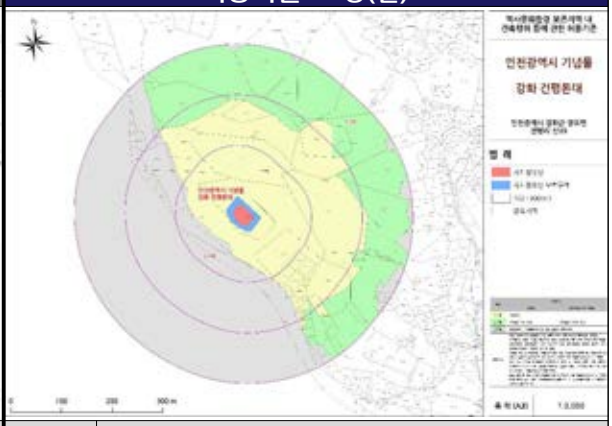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심의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◦ 개별심의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5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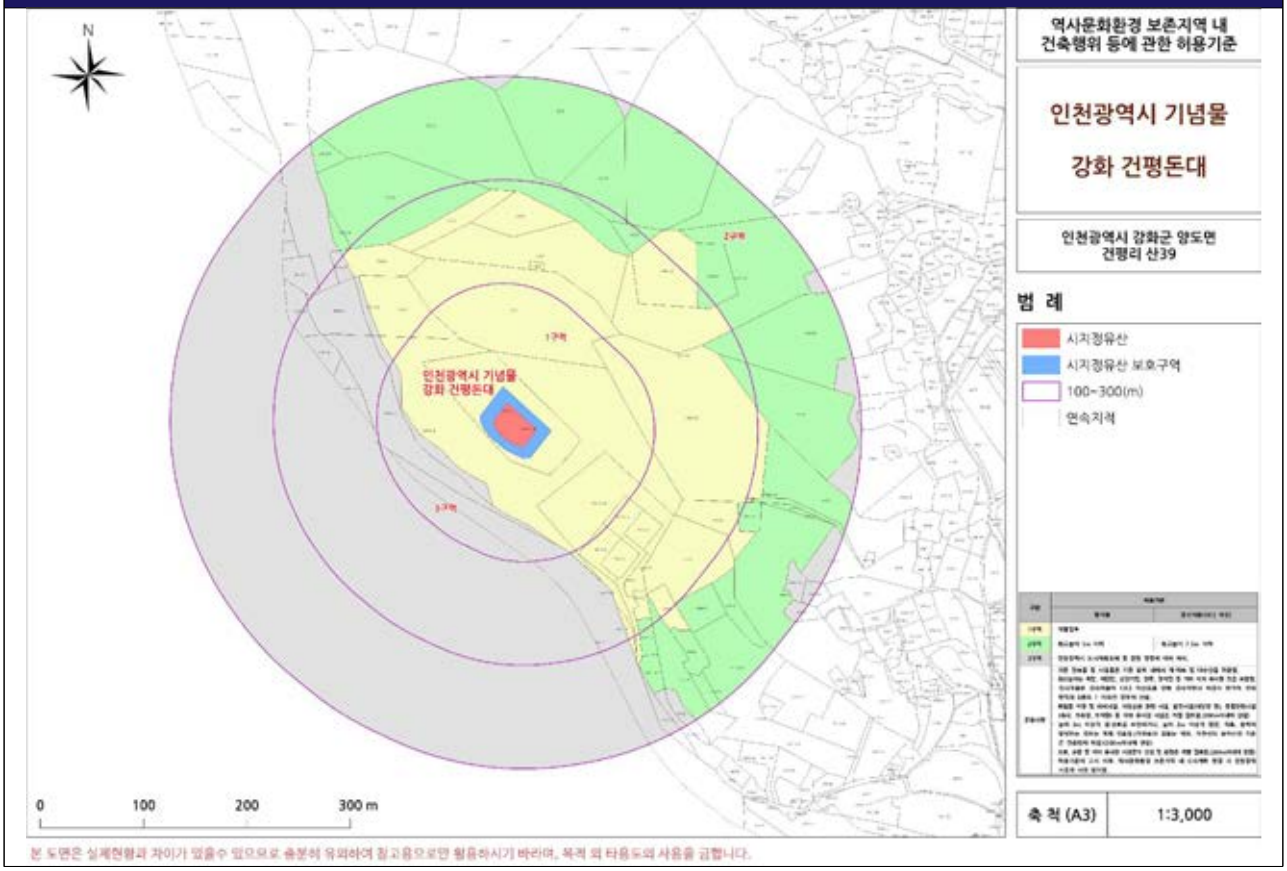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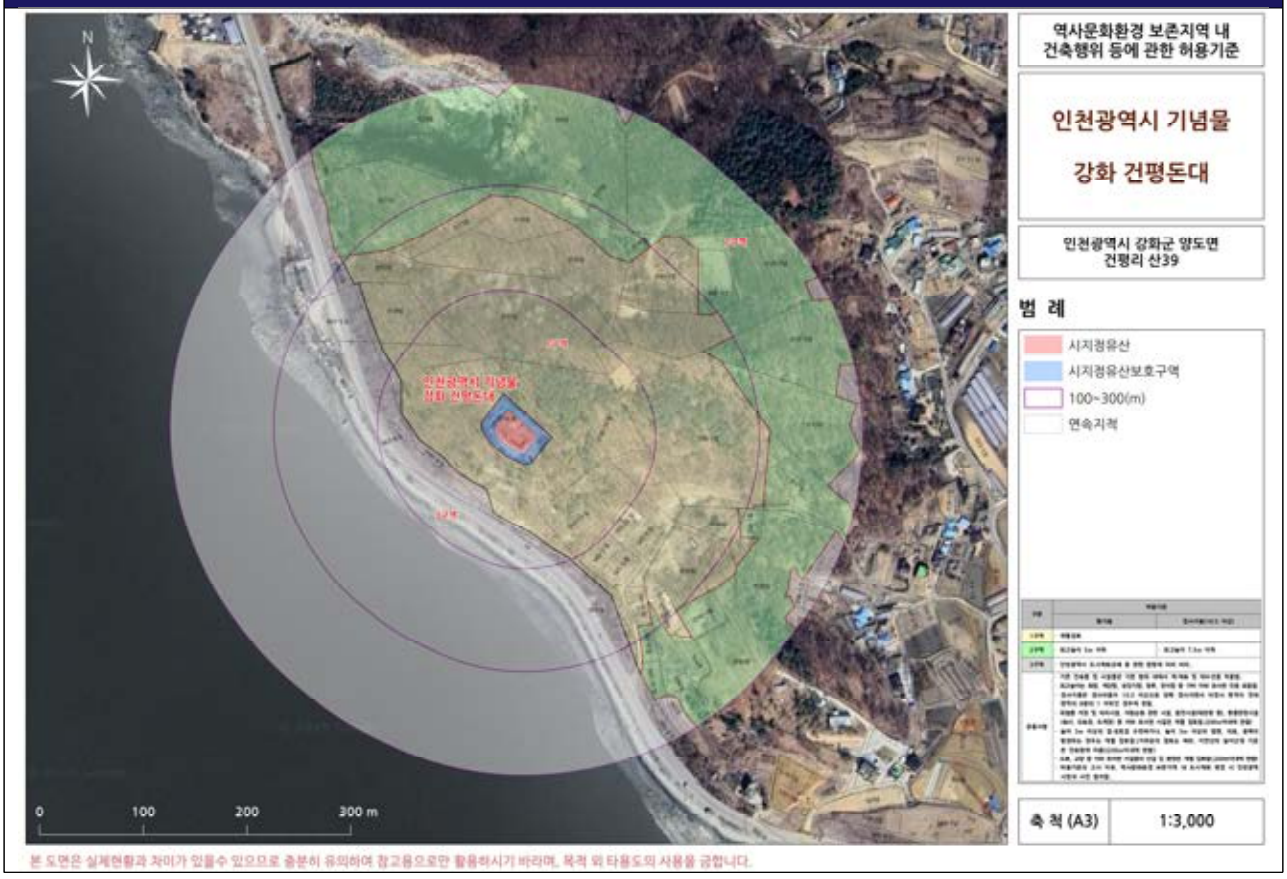

■ 강화 원층사 터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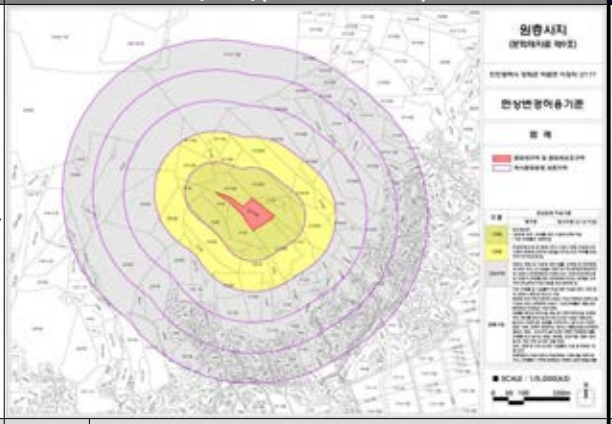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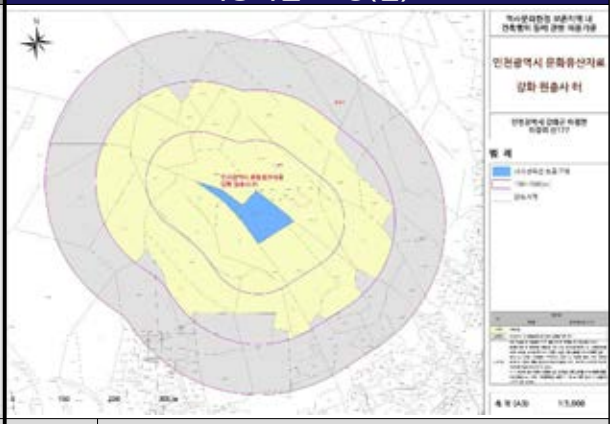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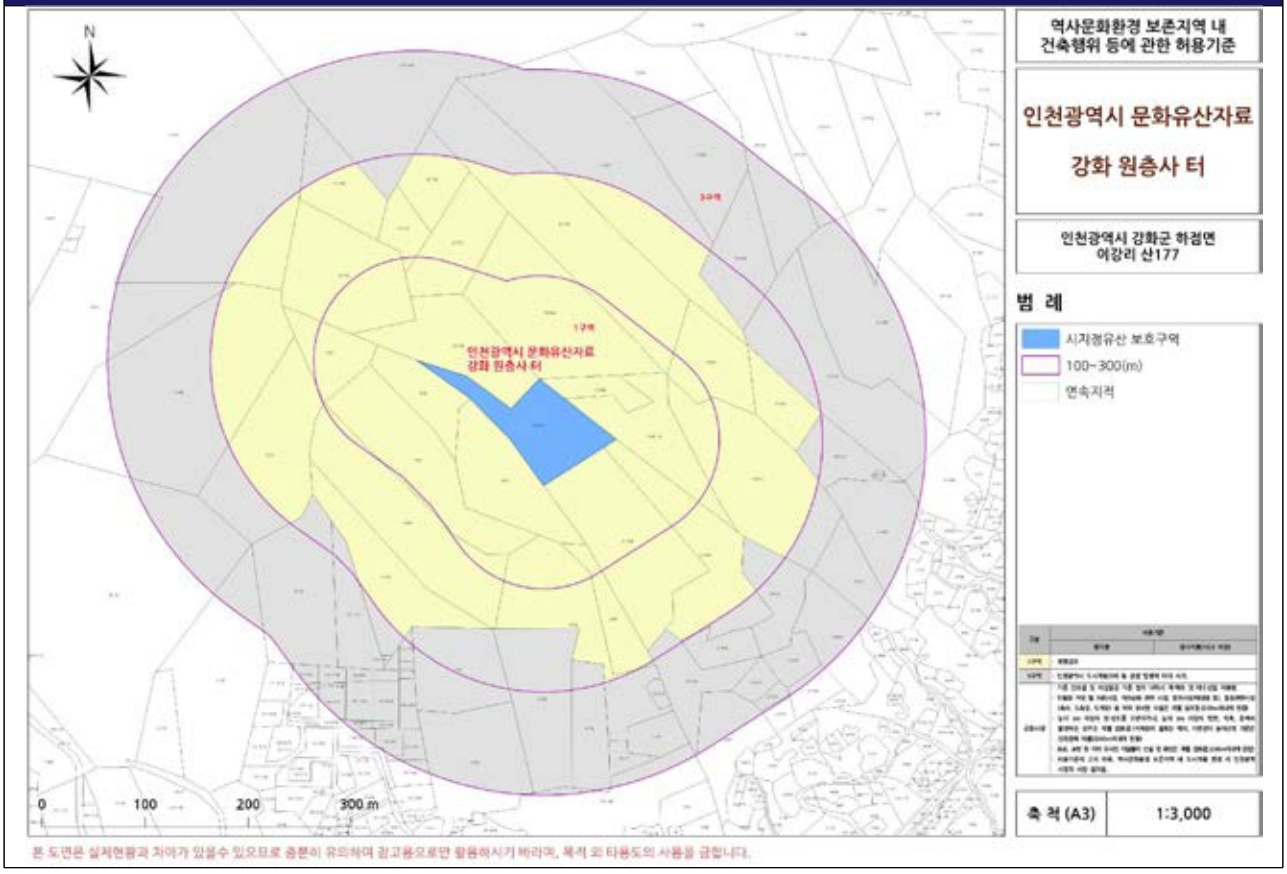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강화 망월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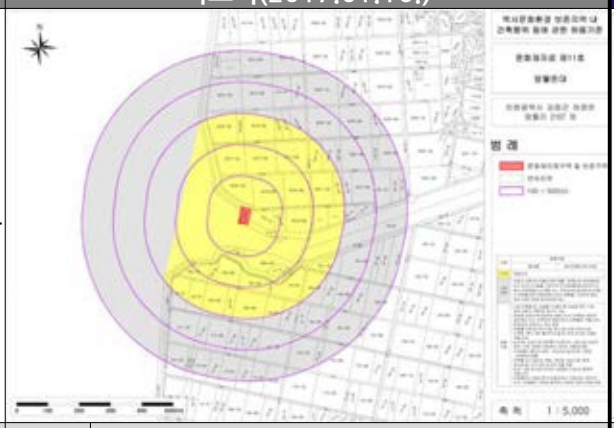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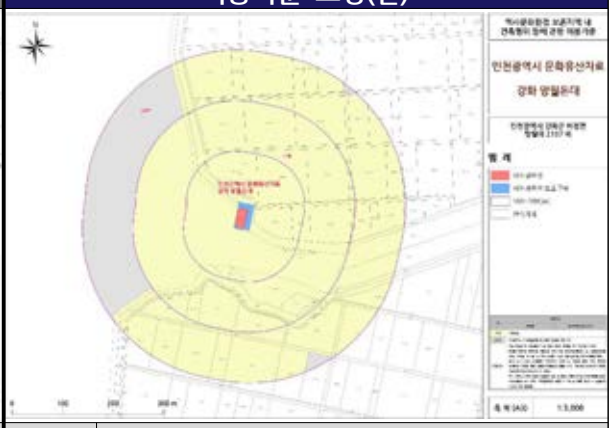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심의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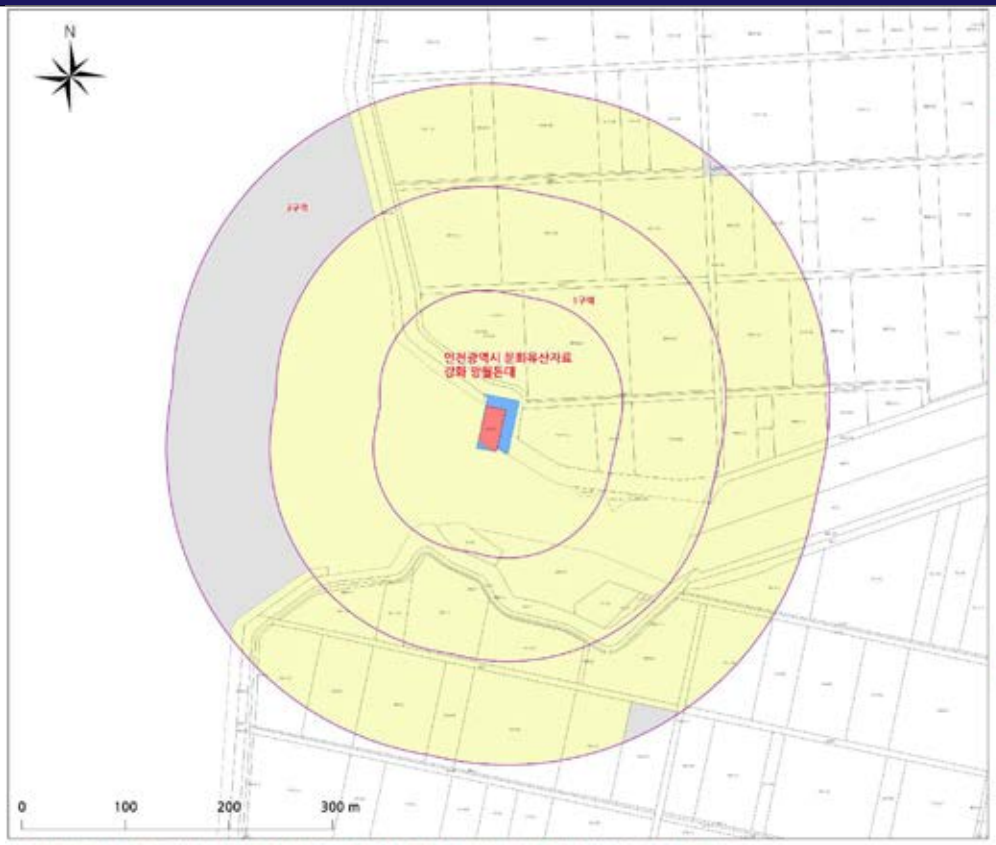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

강화 망월돈대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망월리 2107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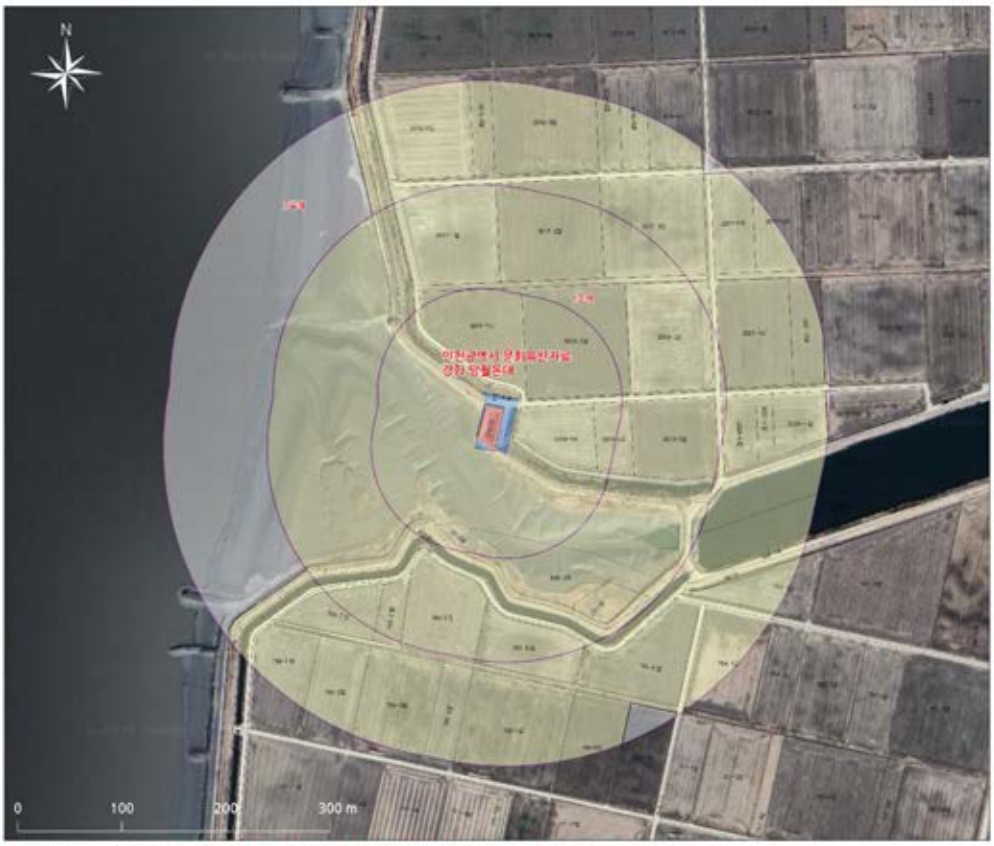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

강화 망월돈대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망월리 2107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■ 강화 무태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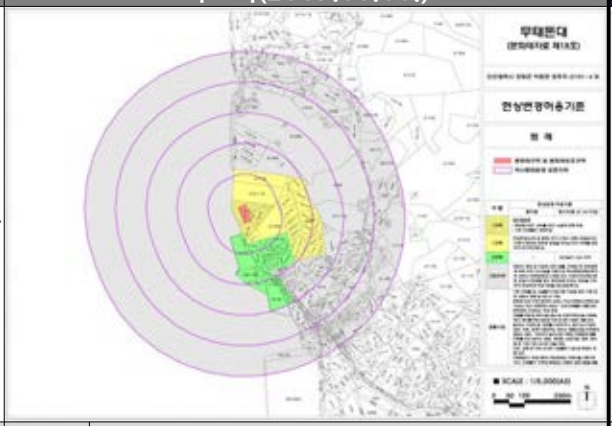 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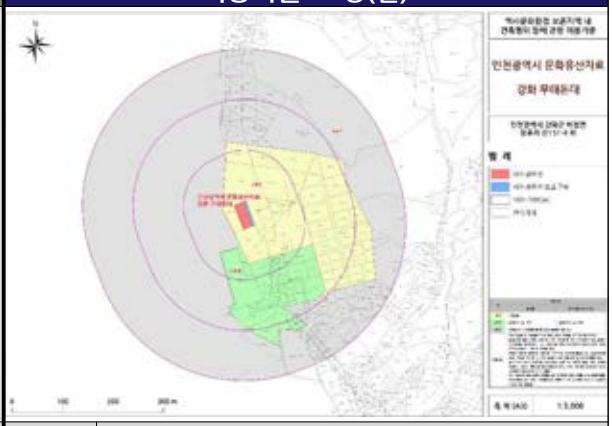 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
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
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,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2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
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
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
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
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
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
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
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
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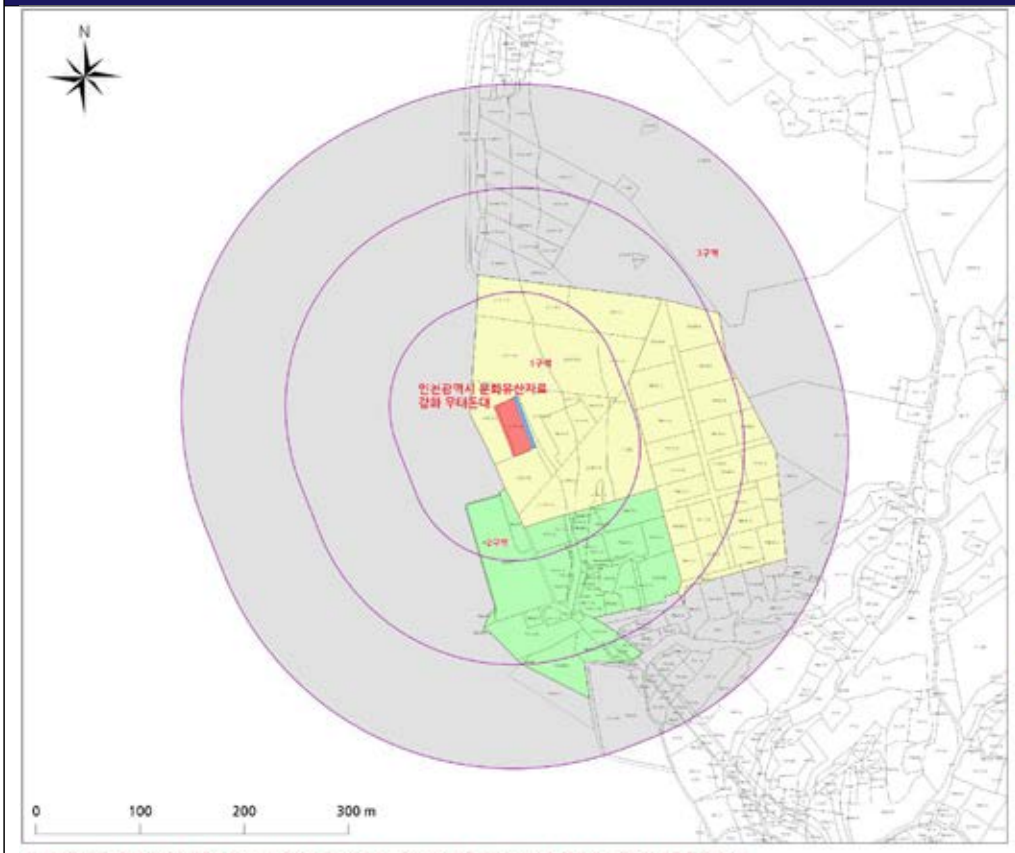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

강화 무태돈대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창후리 산151-4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

강화 무태돈대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창후리 산151-4 외

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
축 척 (A3)	1:3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[붙임 2]

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(안) 의견서

□ **의견 제출자**

○ 주소 :

○ 성명(법인, 단체명) :

○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:

○ 연락처 :

□ **의견 내용**

○ 대상유산 - ○ 의견사항 -

상기 본인은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5. . .

의견제출자 : (인)

인천광역시장 귀하